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 성 분석(Gender Analysis)을 중심으로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이 소 희

# 국 문 초 록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1995년 7월 시행된 이후 20년 동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가 꾸준히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지위에 놓여 있고, 동시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및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를 활용하여 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재취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효과성에 대한 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외적 효과성과 내적 효과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는바, 외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수급과 관련한 성별현황 및 성별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내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5개년도(1차~15차) 자료 및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855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카플란-메이어 분석과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적 효과성 분석결과, 고용보험제도는 보다 많은 여성근로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불리한 노동시장 지위와 노동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업급여의 수

혜인원, 수혜건수, 수혜금액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성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카플란-메이어 방법을 통한 내적 효과성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여성의 재취업확률이 남성에게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을 이용한 내적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이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재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차별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률 제고, 여성의 실업사유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출산 및 양육 관련 급여 신설, 재취업 지원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제도, 성 분석, 재취업, 한국노동패널조사, 카플란-메이어 분석,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

**학 번 : 2012-21944**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6
제1절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선행연구.....	6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8
제3절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 선행연구.....	14
제4절 동태적 노동이동 이론.....	18
제3장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제도 체계.....	23
제1절 고용보험제도 체계 .....	23
제2절 실업급여제도 체계 .....	26
제4장 연구 설계.....	30
제1절 연구 분석틀 .....	30
제2절 연구 분석대상 .....	31
제3절 연구 분석방법 .....	35
제4절 연구 분석변수 .....	39

<b>제5장 연구결과 I : 고용보험의 외적 효과성</b>	<b>41</b>
제1절 여성과 노동의 성별분업	42
제2절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제도 적용현황	52
제3절 실업급여제도 수급현황	59
제4절 실업급여제도 급여수준	64
제5절 소결	66
<b>제6장 연구결과 II : 고용보험의 내적 효과성</b>	<b>67</b>
제1절 연구 분석대상의 기초통계	67
제2절 연구 II-1 : 카플란-메이어 분석을 통한 재취업효과	69
제3절 연구 II-2 :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을 통한 재취업 효과	85
<b>제7장 결론</b>	<b>91</b>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1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94
<b>참고문헌</b>	<b>101</b>

Abstract

## 표 목차

[표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과정·····	24
[표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의 변화 ·····	25
[표 3] 실업급여제도 ·····	27
[표 4] 실업급여 수급기간·····	29
[표 5] 분석표본의 도출과정·····	35
[표 6] 변수의 정의와 측정 ·····	40
[표 7] 연도별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	44
[표 8] 성별 고용률·····	45
[표 9] 성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47
[표 10] 성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48
[표 11] 자녀 양육실태 ·····	49
[표 12] 가구 및 성별 가사분담 ·····	50
[표 13] 고용보험 피보험자 ·····	53
[표 14] 성별 임금근로자 및 피보험자 ·····	54
[표 15] 성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55
[표 16] 성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56
[표 17] 성별 상실사유 ·····	57
[표 18]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59
[표 19] 실업급여 세부 프로그램별 현황 ·····	61
[표 20] 성별·실업급여 기초임금일액별 수급자 비율 ·····	64
[표 21] 성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64
[표 22] 성별 실업급여 기초임금일액 수급자 비율·····	65
[표 23] 재취업효과 분석의 주요 변수 기초통계·····	68
[표 24] 주요 변수 성별 분리 기초통계·····	69

[표 25]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재취업소요기간	70
[표 26]	성별 재취업소요기간	72
[표 27]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74
[표 28]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76
[표 29]	표본 요약	76
[표 30]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78
[표 31]	표본 요약	79
[표 32]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80
[표 33]	표본 요약	81
[표 34]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81
[표 35]	표본 요약	82
[표 36]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86
[표 37]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88
[표 38]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89
[표 39]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90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분석틀.....	31
[그림 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43
[그림 3]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46
[그림 4] 누적 재취업확률.....	75
[그림 5] 누적 재취업확률.....	77
[그림 6] 누적 재취업확률.....	79
[그림 7] 누적 재취업확률.....	83
[그림 8] 누적 재취업확률.....	83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은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의미가 깊다. 고용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 일정기간에 걸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실업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발맞추어,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2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며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 발전되어 왔다. 시행초기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70인 이상<sup>1)</sup>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으나, 1998년 10월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의 가입이 이루어져 임금근로자 전 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고용보험제도가 꾸준히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상황 속에서 고용보험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성은 비정규직, 무급가족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등의 비율이 높아 최근까지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김종숙 외(2004)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고용불안정, 저임금, 성 차별, 경력 단절을 경험함과 동시에 임신, 출산, 가사노동 등의 역할을 사회구조적으로 부여받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지위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고 한다.

---

1)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대상이었다.

실제로 사회보험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중심으로 고안되었다. 즉 남성은 생계책임자이면서 유급노동자의 역할을, 여성은 피부양자이면서 무급가사노동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남성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여성의 위협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sup>2)</sup> 되었다. 이에 여성주의자들은 사회보험제도가 결코 성 중립적이지 않으며,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제도가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실제로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혜란 외(2009, pp. 4-5); Sainsbury(1999); Budlender(2000)].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30~40년 동안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징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로 지속되었으며, 기존의 복지정책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다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인 시각에 입각한 정책과 실천방법의 개발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연구동향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시도된 연구나 제도 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박영란 외(2001, p. 4)].

또한 고용보험 가입·수급현황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고용보험 각 사업에 대한 결과평가 등은 성별 분리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제도 내 여성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김종숙(2005, p. 108)]. 특히 실업급여제도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실업급여의 효과를 성별로 분리하여 남녀 근로자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제도에 다시 반영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는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

2) Taylor-Gooby(1991), Oroff(1993), Sainsbury(1993).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고용보험제도가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재취업소요기간과 재취업확률에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카플란-메이어(Kaplan-Meier) 분석 및 콕스 비례적 해저드(Cox Proportional Hazard)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제도의 적용 및 수급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외적 효과성을 검토한 후,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에 있어서 성별(Gender)이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를 카플란-메이어 분석 및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성별이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상황<sup>3)</sup>에서 성별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 연구 역시 연구 분석 자료의 부족으로 논의의 수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실업급여제도가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작게나마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실업급여제도가 여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의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보장 제도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성에

---

3) 이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 실업급여제도를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분석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김은하 외(2010, pp. 240-241)], 엄현택 외(2010)에 의하면 유사한 주제의 국내 연구는 더욱 드물다고 한다.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 을 시도하였다.

성 분석은 1980~90년대 국제기구 및 해외 여성정책분야에서 발달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한 정책분석도구이다[박영란 외(2001, p. 3)]. 즉 정책의 성 분석이란 여성정책<sup>4)</sup>에 있어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하나로서,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분석의 틀과 내용은 주로 노동의 성별분업, 혜택 및 이익의 분배,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성, 이러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구성된다[이혜경(1999); ILO(2001)].

구체적으로 정책의 성 분석은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역할, 책임, 자원, 우선순위 등이 정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성별 분리통계의 수집을 통해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한다[보건복지부(1999)]. 특히 여성정책의 대상으로서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이와 같은 여성근로자의 상황과 남녀 간에 존재하는 사회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실업의 위험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보다 성 인지적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그동안의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성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고용보험과

---

4) 김선욱(1995)에 의하면 여성정책이란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여성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포괄적 국가정책이다[권영자(1995)에서 재인용]. 즉 여성정책은 가부장제와 남녀평등사이의 현실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성(Gender) 관점을 반영하여 각 성별에 미친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의 효과성을 ‘외적 효과성’ 과 ‘내적 효과성’ 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외적 효과성은 고용보험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모두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으로서 고용보험의 외연적 포괄범위에 관한 효과성이며, 내적 효과성은 고용보험의 포괄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제도를 통하여 재취업이라는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가와 관련된 효과성이다.

우선 외적 효과성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남녀 성별 분리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의 적용현황’ 과 ‘실업급여 수급 및 급여수준’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외연적 포괄범위 및 제도 적용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을 수행하고,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15차년도 패널조사 자료와 15차년도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내적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국내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을 대상으로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하는 패널조사이며, 패널조사 자료에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구성원들의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서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내적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의 직업력 자료와 개인 및 가구 자료를 결합하여 카플란-메이어 방법(Kaplan-Meier method)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재취업소요기간 및 재취업확률(실업탈출확률)의 차이와 성별비교에 따른 재취업소요기간 및 재취업확률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내적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여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고자 했을 때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 다양한 인구학적·경제적·일자리 특성 요인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제1절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선행연구

Sainsbury(1999)와 같은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성 중립적일 수 없는데, 이는 복지국가가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피부양자와 무급가사노동자로, 남성은 부양자와 유급노동 시장 종사자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하 외(2010)에서도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여성주의의 입장은 복지제도가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복지제도에서 주변화하고 배제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노동시장 내 위치와 무급노동인 가사노동을 간과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Oroff(1993)와 Sainsbury(1993)가 지적하듯 결국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Daly(199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의 사회보험제도는 남성의 생활주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은퇴, 실업,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제도에 적절히 반영한 반면 여성의 위기 상황인 사별, 가족 돌봄, 임신, 출산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편, 실업급여제도를 성(Gender)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제도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비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김은하 외(2010)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sup>5)</sup>

첫째, 여성근로자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은 실업급여제도에 적용되기 힘들다. 여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속해 있어 실업급여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기[Smith et al.(2003)] 때문이다.

둘째, 실직한 여성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자리에 속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급여는 실직 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Pascall(1986)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제도에서 고용에 기초하여 공급되는 자원이라 할지라도 여성에게는 차별적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사회보험의 자격 요건을 획득하는 것이 일하는 남성보다 일하는 여성에게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6)</sup> Latimer(2003) 역시 여성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일정수준의 기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이직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이직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Grimshaw and Rubery(1997)도 여성이 지속적인 고용 이력과 주당 최소 근로시간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성과 동일한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는 비교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McHugh and Kock(1994)는 돌봄 노동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 배우자가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여성, 임신 이후 실업을 선택하는 상황,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일하기를 포기한 여성 등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둔 여성들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며 여성이 남

---

5) 이하의 분류는 김은하 외(2010, pp. 241-243)의 내용을 참고함.

6) Smith et al.(2003)에 의하면 여성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인 실업이라고 한다. 여성들은 남편의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사를 해야 하거나, 돌봄 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사유로 인해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김은하 외(2010, p. 242) 참고].



정보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묘사하였다.

셋째, Smith et al.(2003)의 연구결과와 같이 실직한 여성근로자가 모든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 할지라도 여성이 받는 실제 지급액 수준은 남성의 지급액보다 낮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여성은 낮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은 생계유지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상의 여성주의적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바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의 복지국가는 가부장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제도는 여성들에게 사회구조적으로 부여된 임신과 출산,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돌봄 노동 등의 역할, 남성과 다른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아 설계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실업급여제도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실업급여제도의 부정적 효과는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 등 실업급여가 근로에 대한 유인 즉 실업탈출의 동기를 감퇴시켜 노동시장 기능에 부(-)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는 실업급여가 의중임금을 높여 취업가능성을 낮추고 실업기간을 길게 한다는 노동경제학의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Ehrenberg and Smith(1988)].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의중임금을 상승시키고, 수급기간동안 구직활동이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저해하여 사실상 근로자들의 실업탈

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Feldstein(1976), Mortensen(1977), Ehrenberg and Smith(1988), Meyer(1990), Katz and Meyer(1990), Atkinson and Micklewright(1991), Tatsiramoss(2006), Virjo(2007) 등 다수의 실증연구들 역시 직업탐색이론에 근거하여 실업급여가 수급자들의 의중임금을 상승시키고, 구직노력을 저해하여 실업근로자의 취업가능성을 낮추고 실업기간을 길게 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탈출의 동기가 감퇴한다는 이른바 탈동기효과(Disincentive effect)는 실업급여의 보장수준을 낮추는데 활용되는 주요 논거이기도 하다[윤정향·이시균(2008)].

이처럼 실업탈출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실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업자의 실업탈출확률이 낮아지는 부(-)의 기간의존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과 실업급여 소진직전에 실업탈출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스파이크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Meyer(1990), Katz and Meyer(1990), Belzil(1995)의 연구 역시 실업급여가 소진되기 직전 실업탈출확률이 급격히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밝혔는데, 이러한 스파이크 현상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나타난다는 증거로 흔히 제시되고 있다[강철희 외(1999, pp. 2-5), 김철희(2004, pp. 178-181)].

Meyer(1990)의 경우, 1978년에서 1983년 사이의 CWBH(Continuous Wage and Benefit History)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드(Hazard) 모형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혼, 높은 교육수준, 높은 임금수준, 그리고 낮은 실업급여 수준이 실업탈출확률을 높이고, 부양가족이 많고 실업률이 악화될수록 재취업확률은 낮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Katz and Meyer(1990) 역시 1980~1981년 사이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자료에 대한 카플란-메이어(Kaplan-Meier) 생존분석을 통해 실업급여수준뿐만 아니라 급여일수가 증가할수록 부(-)의 기간의존성이 나타나 실업기간과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됨을 제시하였다. 이 두 연구는 모두 급여소진 직전의 시점에서 실업탈출확률이 급격히 상승

하는 스파이크 현상을 보고하면서, 이것이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Belzil(1995)은 1972~1984년 사이 캐나다 정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업급여 소진시점에서 실업탈출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남을 밝혔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르게 해석하였다. 즉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소진시점에 다가갈수록 실업자들이 곧 그만둘 직장제외까지 수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1980년 8~10월 사이 미국 전역의 29,620가구를 조사한 EOPP(Employment Opportunity Pilot Project) 자료를 해저드(Hazard) 모형으로 분석한 Blau(1992) 역시 67~70%의 실업구직자는 의중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을 받아들인다고 분석하여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의중임금이나 직장탐색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함을 보여주었다[강철희 외(1999, pp. 2-5)].

나아가 이러한 기간의존성 효과는 각 국가의 제도적 요소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Korpi(1995), Carling et. al(1996)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프로그램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고용으로의 전환확률이 줄어드는 부(-)의 기간의존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고용전망이 불투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재취업확률 감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부(-)의 기간의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철희(2004, pp. 178-181)].

반면 Wang and Williamson(1996), Acemoglu(2001)와 같이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연구경향으로, 실업급여가 구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구직성과를 제고하여 실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일자리 탐색의 기회비용을 상쇄해주므로 더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 구직기간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Marimon and Zilibotti(1999)의 연구도 실업급여가 급여혜택으로 인해 실업기간을 늘리게 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직업에 대한 탐색기간 보장을 통해 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높

임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고용보험제도의 역사가 짧지만 실업급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방하남(1998), 류기철(1999), 강철희 외(1999), 유길상(2004) 등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6년부터 1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관해 연구한 방하남(1998)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대체로 낮고, 25세미만 청년층과 고령층의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1996년 7월 1일부터 1997년 6월 10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류기철(1999)의 연구는 남녀 모두 재취업확률이 실직 후 8주까지 급증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연령은 여자의 경우에만 정(+)의 관계에서,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에만 정(+)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성별과 관계없이 재취업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철희·김교성·김진욱(1999)의 연구는 연령, 성별(여성), 근속년수, 임금일액의 변수가 실업기간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이전 직장의 업종, 직종, 실직사유 등에 따라 재취업률이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강철희 외(1999, pp. 9-11)]. 또한 유길상(2004)은 실업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제도변수로 지속적 구직활동여부, 월평균 취업알선횟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재취업률이 낮음을 제시하였다.

황덕순 외(2004)의 연구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직자 조사(1998년 8월 기준)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및 실업으로부터의 탈출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분석하였다. 준모수적 비례적 위험(Cox) 모형과 CRM(Competing Risks Model)을 분석에 이용한 결과,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잔여

수급기간이 길수록 재취업으로의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정향·이시균(2010), 김철희(2004), 조홍식·김진구(2000)의 연구는 실업급여제도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정향·이시균(2010)은 실업급여 행정자료와 지역고용구조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급여가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미시적으로 콕스 해저드 모형을, 거시적으로 다층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재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시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확률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해당 연구는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은 결과적으로 고용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철희(2004)는 고용보험DB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층 중에서 직업훈련(실업자재취업훈련) 참여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해저드 모형과 가속실패시간 모형(AFT)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업훈련 참여가 훈련기간, 훈련 직종 모두에서 재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이 빈곤층의 실업탈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재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업급여 또한 빈곤층의 재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조홍식·김진구(2000)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를 사업별로 분석하여,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에 대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태균·김진욱(1998)은 실업급여가 시행된 후 첫 18개월간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전수 조사하여 실업탈출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근속년수와 교육수준 등 실업자의 인적속성은 실업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실업탈출확률이 낮아지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전에 높은 근속년수, 고학력, 고임금에 해당하던 근로자들이 실업을 탈출하는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당시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김철희(2004, pp. 178-181)]

유길상 외(2003)에서는 2000년 4~6월의 기간 중에 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1002명과 신청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비수급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했을 200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추적조사한 고용보험DB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로짓분석과 해저드 분석을 통해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길고, 재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취업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재취업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도 보고하고 있다.

엄현택(2008)은 2003년도 실업급여 수급자 6000명을 수도권 등 6개 권역별로 표본 추출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타당성을 연구하였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재취업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엄현택·이창원(2010)은 직업탐색이론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수준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지거나 급부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업기간이 길어지고 재취업률이 떨어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고용보험 DB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도 실업급여 수급자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수록 실업기간이 늘어나거나 재취업률이 저하되지 않으며, 실업탈출확률도 실업 후 18~22개월 후에 가장 높아 수급기간 종료시점이 가까울수록 재취업확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에 비하여 수급기간이 짧고

지급수준도 낮은 현행 실업급여정책이 수급자의 실업급여 의존도를 낮추어 이른바 유럽형 실업병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으나, 법정 수급기간에 비하여 실업기간이 과도하게 길기 때문에 제도 본래의 목적인 실직 중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결과의 주류적인 입장은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흐름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한 것은 활용된 자료의 특성과 방법론의 차이, 그리고 해당 제도가 시행된 시기적 상황과 노동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 제3절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 선행연구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을 성별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대체로 실업급여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있다.

홍찬숙 외(2010)에 의하면 미국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는 복지체계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수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지하거나 재생산한다는 관점 하에서 진행되었는데, 여성과 유색인종, 특히 흑인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실업급여제도의 문제를 살펴본 Esping-Andersen(1990)의 연구와 같이 성별과 인종, 지역차이와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sup>7)</sup> 여기에서 중

---

7) 캐나다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유색인종이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보다는 노동시장의 진입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Townson and Hayes(2007)의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1996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과 육아나 돌봄 노동으로 노동시장을 떠나있던 여성처럼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재진입하는 경우에 오히려 실업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커졌다고 한다[홍찬숙 외(2010, p. 36) 참고].

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서, 첫 번째는 실업급여제도가 노동시장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과거의 성역할모델 또는 가족모델에 기초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제도의 실질적 규정들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Pearce(1990)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실업보험은 1930년대 불황기에 노동시장 구조변동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홀벌이 남성가장의 평생고용모델에 근거하여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백인남성 정규직 도시지역 임금생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역사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노동이든 그것이 평생고용모델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Latimer(2003)에서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여성과 유색인종, 농촌지역 종사자들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이들이 자영업자이거나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또는 종교기관이나 소규모 농장에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정규직 평생고용모델과 유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제도의 실질적 규정과 관련하여 수급자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는 ①보험가입자격의 문제(임금 최저선 규정 관련문제, unemployment insurance qualification), ②실업사유와 관련된 수급자격 문제(자발적 실업, 본인의 귀책사유, separation issue disqualifications), ③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문제(구직등록의무, 소개받은 일자리 거부 등, non-separation issue disqualifications)를 기초로 논의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과 유색인종, 농촌지역 종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 [Latimer(2003, pp. 101-103); 홍찬숙 외(2010, pp. 35-36)에서 재인용].

유럽의 경우에도 육아, 돌봄 노동 부담으로 고용불안정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며 가입자격, 수급자격 규정이 야기하는 성 차별이 중요하게 거론되지만, 유럽에서 가장 특징적인 논의는 파생적 수급권과 관련된 논의이다.



Grimshaw and Rubery(1997)는 이것을 두 가지 분배정의 원칙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일반적 보험원칙으로서 개인의 기여에 기초하는 능력주의 원칙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의 원칙은 필요의 원칙으로서 파생적 수급권이라고도 불린다. 필요의 원칙은 사회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 경우 필요의 단위는 보통 개인이 아니라 가족 또는 가구가 된다. Latimer(2003), Sainsbury(1993), Taylor-Gooby(1991)와 같은 여성주의 복지이론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불안정고용으로 인해 일반적 보험의 원칙보다는 필요의 원칙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지급액이 많고 낙인을 덜 수반하는 실업보험보다는 매우 제한적이고 낙인을 수반하는 사회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한 Grimshaw and Rubery(1997) 및 Jepsen and Meulders(1997)는 가족단위의 필요의 원칙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범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홍찬숙 외(2010, p. 37)에서 재인용].

한편, 실업급여제도의 영향 혹은 효과성에 대하여 성 분석(Gender Analysis)을 수행한 국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혜경(2000)은 대상 집단의 성별 프로그램 현황을 중심으로 IMF 이후 실업대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였는데, 프로그램 내용이나 여성의 수급비율 등에 있어서 정부의 실업정책이 남성에게 유리하며, 특히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장지연·호정화(2001) 역시 경기회복 과정의 여성 실업효과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남성이 여성보다 실업탈출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김종숙 외(2004)도 고용보험 DB의 성별 분리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남성의 70% 수준인 현실을 지적하고, 실업급여가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적절히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김은하 외(2010, p. 243)에서 재인용]. 또한 고용보험 이직자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효과를 분석한 김종숙(2005)의 다

른 연구는 여성근로자 중 고용보험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수급이 재취업확률을 높이거나 재취업 후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실무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성별 영향을 분석한 홍찬숙 외(2010)의 연구가 2009년에 수행되었으며, 양적 통계만으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업급여제도의 불평등한 성별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실무자들은 제도의 실질적 중립성(양성 평등성)에 대해 혼란스러운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여러 차원에서 양성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됨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가입,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그리고 구직활동 인정에서 성별영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은하 외(2010)의 연구는 실업급여제도를 규칙과 가입현황을 중심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점들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규칙에 있어서 적용 기준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었으며,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은 피보험자격자와 상실자의 신분을 자주 오가는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 개인 특성과 일자리 특성이 동일한 경우에 대부분 남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았으며,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는 여성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확률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을 제시하며 실직한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급여제도에서 불리할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국내의 경우 고용보험제도와 실업급여제도를 성(Gender)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실증적인 연구도 부족한 편이다.

## 제4절 동태적 노동이동 이론

생존분석은 실업탈출여부가 아닌 실업탈출기간(Length of spell, duration)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실업탈출기간을 종속 변수로 하여 실업탈출기간이 초기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다.

### 1. 해저드 모형(Hazard model)

해저드 모형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기간에 대한 분석을 행할 때에 특정 시점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까지의 지속기간을 확률변수로 가정하고 이 변수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경제적·경제외적 요인이 이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해저드 모형은 어느 한 상태의 지속기간을 연속확률변수(Continuous random distribution)  $T$ 로 이해하면 그 기간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어느 상태(취업, 실업 등)가 발생할 확률분포(탈출확률분포), 즉 연속기대시간 분포를 가지게 된다.<sup>8)</sup> 한 상태의 지속기간과 탈출확률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바로 지수분포로서 한 상태로부터의 탈출률(Hazard rate)은 그 상태의 지속기간(Length of spell)의 역수

---

8) 생존분석에서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모수적 모형(Parametric model)과 비모수적 모형(Non-parametric model)이 있으며, 모수적 모형은 생존기간이 특정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와이불분포(Weibull distribution), 로그로지스틱분포(Log-logistic distribution), 감마분포(Gamma distribution)가 있는데, 이중 지수분포와 와이불분포의 생존함수와 해저드함수(Hazard function)가 간단한 형태를 갖기 때문에 널리 쓰인다. 비모수적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생명표법(Life-table method), 카플란-메이어 방법(Kaplan-Meier method),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이 있는데, 이는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생존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어떤 집단의 생존기간을 종속변수로 놓고 계산하여, 어떤 시점에서의 생존율과 평균생존율을 계산한다[김민경(2003, p. 15)].

가 된다[김철희(2004, p. 187)].

특히 해저드 모형은 관측기간 동안 특정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우측 절단현상(Right-censoring)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성을 상실하지 않음으로써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방법보다 우월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일정시점으로부터 특정 상태 발생까지의 기간  $T$ 는 확률분포변수인데 이 확률분포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누적확률밀도함수  $F(t)$ 가 있다 [김철희(2004, p. 187)]. 즉 누적확률밀도함수  $F(t)$ 는  $T$ 가 임의의  $t$ 보다 작을 확률로서 다음과 같다.

$$F(t) = \Pr\{T \leq t\}$$

이 경우 모든  $t$ 에 대하여  $F$ 값을 안다면  $T$ 의 분포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이 관심 사건이므로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는  $t$ 시점 이후까지 생존할 확률, 즉 실업상태가 지속될 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t) = \Pr\{T > t\} = 1 - F(t)$$

누적확률밀도함수로부터 확률밀도함수  $f(t)$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f(t) = \frac{dF(t)}{dt} = -\frac{dS(t)}{d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Delta t}$$

연속확률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확률밀도함수 외에 해저드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확률밀도함수에 ‘ $t$ 기까지 생존했다’는 조건을 부과한 것이며, 생존 자료의 확률분포를 묘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즉 해저드함수  $h(t)$ 는 어떤 상태가  $t$ 시점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상태가  $t$ 시점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을 의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 | T \geq t)}{\Delta t} \\
&= \frac{1}{P(T \geq t)}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Delta t} \\
&= \frac{f(t)}{S(t)} = -\frac{d}{dt} \log S(t)
\end{aligned}$$

위 식에서 양변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생존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해저드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S(t) &= \exp\left[-\int_0^t h(u) du\right] \\
f(t) &= h(t) \exp\left[\int_0^t h(u) du\right]
\end{aligned}$$

이제 해저드함수의 형태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해저드함수는 상태 발생시기의 확률분포를 설명하는 방법이므로 모든 해저드함수는 그에 대응되는 확률분포를 가진다. 대체로 해저드함수는

$$h(t) = h_0(t) \exp(\beta_1 x_1 + \dots + \beta_k x_k)$$

로 표시된다. 가장 단순한 분포형태는 해저드확률이 지속기간과 관계 없이 일정한 지수분포를 갖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인  $h(t) = \exp(X'\beta)$ 로 함수를 표시하고자 한다. 이 함수에서  $X$ 는 근로자의 제반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의 벡터이고  $\beta$ 는 설명변수  $X$ 의 효과(Constant proportional effect)를 나타내는 계수벡터이다.

위의  $h(t) = \exp(X'\beta)$  식을 앞서 도출한  $S(t)$ 와  $f(t)$ 의 생존함수와 확률밀도함수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S(t) = 1 - F(t) = \exp[-t \exp(x' \beta)]$$

$$f(t) = \exp(x' \beta) \exp[-t \exp(x' \beta)]$$

관측된  $n$ 개의 상태지속기간이 상호독립이라면,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모수  $\theta$ 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결합확률함수의 형태가 된다.

$$L(\theta) = \prod_{t=1}^n f(t_i, \theta)$$

지속기간 자료(Panel data)의 특성은 분석시점까지 관심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미완결된 관찰기간(Incomplete spell)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우도함수에 잘린 기간(Censored spell of length)도 포함시켜야 계수 값의 편의를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k$ 번째 기간이 완결되었으면  $d_k = 1$ , 잘렸으면  $d_k = 0$ 으로 표시할 때, 관찰된 기간의 대수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L &= \sum_{i=1}^n d_i \ln f_i(t) + \sum_{i=1}^n (1 - d_i) \ln S_i(t) \\ &= \sum_{i=1}^n d_i (\ln h_i(t) + \ln S_i(t)) + \sum_{i=1}^n (1 - d_i) \ln S_i(t) \\ &= \sum_{i=1}^n d_i \ln h_i(t) + \sum_{i=1}^n \ln S_i(t) \end{aligned}$$

여기에  $h(t) = \exp(X' \beta)$ 와  $S(t) = 1 - F(t) = \exp[-t \exp(x' \beta)]$ 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설명변수들에 대한 계수 값을 구할 수 있다.

$$L = \sum_{i=1}^n d_i x_i' \beta - \sum_{i=1}^n t_i \exp(x_i' \beta)$$

한편, 여기서는 중도 절단된 자료(Censored data)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도 절단은 기간 자료(Duration data) 분석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중도 절단된 경우는 조사기간 동안 실업 상태였던 사람이 조사기간이 끝난 시점에서도 실업상태인 경우라 말할 수 있다. 절단된 자료는 좌측 절단과 우측 절단 자료로, 일반적으로 패널 자료들은 좌측 절단 자료의 탈락을 막기 위하여 관찰 이전 상황에 대한 회고성(Retrospective) 질문을 포함시킨다. 이를 기초로 과거나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상태를 판단하지만, 이러한 회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좌측 절단 자료는 분석에 사용될 수 없다[김민경(2003, p. 18)]. 반면에 우측 절단 자료는 자료의 소멸 없이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해저드함수  $h(t)$ 는 어떤 사건( $T$ )이  $t$ 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사건이 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 탈출확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상태가 지속되다가 취업으로 순간적인 이행을 하는 경우가 해저드에 해당한다.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 | T \geq t)}{\Delta t}$$

본 연구는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탈출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서 해저드 모형의 준모수적 추정(Semi-parametric estimation)에 해당하는 콕스 회귀식(Cox regression)을 사용한다. 콕스 모형은 위의 식과 같이 시간의존에 대한 특별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

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는데,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 ( $x_i$ )이 시간변화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시간의존에 대한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각각의 설명변수 값에 대한 탈출확률이 비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례적 해저드 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이라고도 불린다. 설명변수 벡터( $x$ )를 가지는 관측치의  $t$ 기에서의 해저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t) = h_0(t) \exp(\beta_1 x_1 + \dots + \beta_k x_k)$$

이때  $h_0(t)$ 는 설명변수와는 독립적인 기간  $t$ 에서의 기본해저드(Baseline hazard)이다. 따라서 비례적 해저드 모형에서 매기의 해저드 변화는 기본해저드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변수( $x$ )는 그 크기와  $\beta$ 의 값에 따라 단순히 기본해저드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을 통해 기본해저드의 분포에 대한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설명변수가 해저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 제3장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제도 체계

### 제1절 고용보험제도 체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2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며 보다 많은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 발전되어왔다. 1995년 도입 당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장이었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빠르게 확대되어 1998년 10월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표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과정

시행년도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특성에 따른 적용범위(적용제외자)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995.7	30인 이상	70인 이상	-자영업자
1998.1	10인 이상	50인 이상	-가족봉사자
1998.3	5인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비해 3할 이상 짧은 시간제 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65세 이상인 자(1997.1)
1998.7			5인 이상
1998.10	1인 이상	1인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003.1			-주당 1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004.1			-4인 이하 농림어업 법인사업 종사자
			-일용근로자
			-주당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2006.1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2008.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65세 이상(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적용)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2015)

이에 2013년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수는 1,747,928개, 피보험자수는 11,571,213명에 이르고 있으며, 김종숙 외(2004)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에 있어 한계집단에 위치하던 여성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종사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속한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에는 제도적으로 근로자 특성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자가 존재한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의 특수직역연금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는 근로자 특성에 따른 적용제외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일용근로자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현재 적용제외자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될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부분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의 변화

고용보험 시행 시 적용 제외 대상	현재 적용 제외 대상(2015년 현재)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실업급여는 적용제외대상)
시간제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짧은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일용근로자(일일 고용되는 자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공무원(2008.9.22.부터 별정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2015)

## 제2절 실업급여제도 체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하위 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고용노동부(2015)].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노동부(2015)].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안정사업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사업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2015)]. 이러한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 중에서도 구직급여가 실업급여의 핵심으로서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단기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뉜다.

[표 3] 실업급여제도

구분		요건	지급액
구 직 급 여	구직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li> <li>-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li> <li>※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li> <li>-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li> <li>※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li> <li>-(일용)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li> <li>-(일용)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 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직 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li> <li>-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li> <li>-최고액 : 이직일이 2015년 이후 1일 43,000원, 2006년 이후 1일 40,000원, 2006년 이전 1일 35,000원</li> <li>-최저액 : 최저임금액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li> </ul>
	상병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li> <li>-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li> <li>-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직급여액과 동일</li> <li>-7일 이상 상병</li> </ul>
	연장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련 연장 급여</li> <li>개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li> <li>-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직급여일액의 100%</li> <li>-최대 2년</li> <li>-구직급여일</li> </ul>

	연장 급여	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일 액의 70% -60일 범위 내
취 업 촉 진 수 당	조기 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20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여야 함(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구직급여잔 여일수의 1/2 (재취직 당시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3)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 중 의 교통비, 식 대 등 -5,000원(1일)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한 취업 또는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2015)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text{구직급여 지급액} = \text{퇴직 전 평균임금의 } 50\% \times \text{소정급여일수}$$

의 방법에 의해 지급되며, 최고액은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0,000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이다.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으

로 산정되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된다.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sup>9)</sup>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2015)  
(연령 :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이며, 임신, 출산,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상·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로 정해진다.

9)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제4장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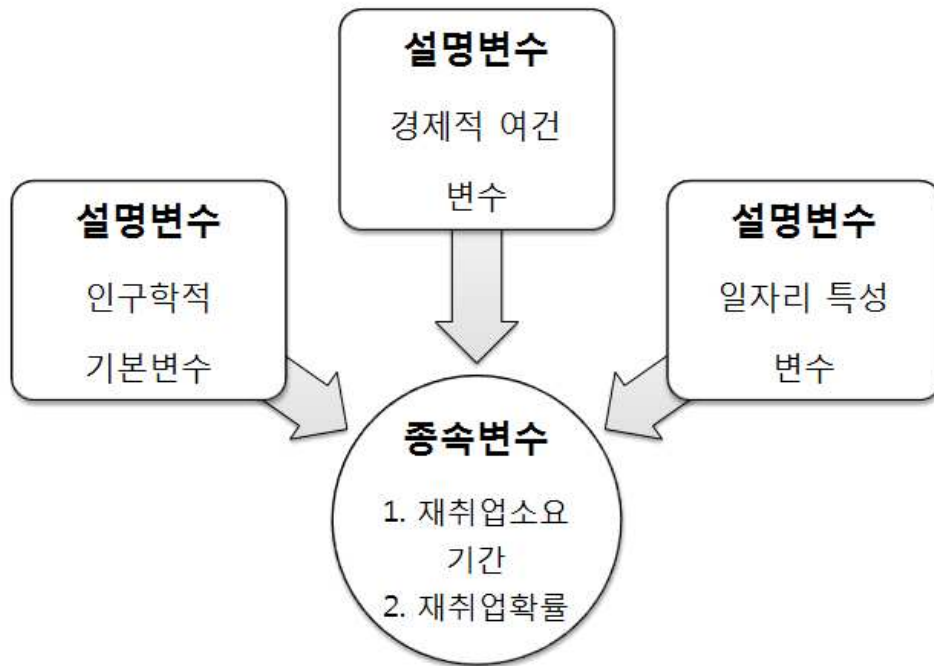
### 제1절 연구 분석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복지국가가 여성은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피부양자이자 무급가사노동자, 남성은 임금노동시장의 근로자이자 가계부양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국가가 성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사노동, 돌봄 노동 등 가족 내 역할과 지위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는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노동시장에의 참여와 유지를 어떻게 보장해주고 있는가에 따라 사회보험제도 내에서의 성별지위와 수급양상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의 적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위치와 노동의 성별분업현황을 검토하고, 제도의 적용과 수급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도가 남녀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다음의 [그림 1]에 제시된 분석틀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카플란-메이어(Kaplan-Meier) 방법을 통해 성별,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에 따라 재취업소요기간과 재취업확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콕스 비례적 해저드(Cox Proportional Hazard) 분석을 통해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부양자녀 유무, 가구근로소득, 실업급여 수급여부, 이전직장의 고용형태 등 다양한 인구학적·경제적·일자리 속성의 설명변수들이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재취업으로 탈출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제도가 재취업효과에 있어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 제2절 연구 분석대상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자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sup>10)</sup> 첫 번째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구축하는 경우로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의 구성은 연구에서 필요한 질문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적합한 통제집단의 구성 및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고, 1회 횡단면 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및 탈퇴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경우는 고용보험DB나 고용노동부 HRD-Net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고용보험DB와 HRD-Net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 및 사업에 관한 대표적인 통계자료로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

10) 이서윤(2014, pp. 164-165) 참고.



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들 정부자료(Administrative data)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DB와 HRD-Net의 자료는 고용보험 하의 임금근로자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관련 연구원이 아니면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 번째 자료 유형은 국책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자료들이다. 대표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KLIPS)’ 자료가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추적·실태조사’와 199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조사자료’를 사용한 연구도 있으나 후자의 두 자료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 조사로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한 한계가 있다. 반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는 횡단면 조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개인의 노동 상태 변화와 노동 상태 간 이동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실증분석의 기초로 사용하였으며, 1차에서 15차까지의 개인용 및 가구용 자료와 15차년도 직업력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1.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KLIPS)는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가구 패널조사로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공개되

어 있는 자료는 1차 조사 자료부터 15차 조사 자료까지이며, 본 논문에서는 15차 조사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각 조사연도별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살펴보면, 2차년도(1999년) 87.6%, 3차년도(2000년) 80.9%, 4차년도(2001년) 77.3%, 5차년도(2002년) 76%, 6차년도(2003년) 77.2%, 7차년도(2004년) 77.3%, 8차년도(2005년) 76.4%, 9차년도(2006년) 76.4%, 10차년도(2007년) 75.5%, 11차년도(2008년) 74.2%, 12차년도(2009년) 73.1%, 13차년도(2010년) 72.1%, 14차년도(2011년) 70.6%, 15차년도(2012년) 70.3%로 나타나고 있으며 4차년도 이후로는 조사 성공률(패널 유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제15차(2012)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2.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구성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 그리고 부가조사 자료<sup>11)</sup>와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크게 조사 당시 가지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나눌 수 있다.

직업력 자료는 회고적(Retrospective) 일자리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

11)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 조사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12차년도 조사가 진행된 2009년 이후부터 고용형태 관련 설문이 본 설문으로 편입되면서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가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제15차(2012)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14, p. 13)].

일자리 정보를 토대로 구성되어있으며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 셋(Data set)만을 가지게 된다.

### 3. 연구 분석대상의 도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직업력 자료와 1차에서 15차년도 조사까지의 개인용 및 가구용 자료를 결합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 1차에서 15차까지의 조사기간(1998년~2012년)동안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15~65세의 개인이며, 재취업소요기간은 퇴직시기에서 취업시기 사이의 기간으로 계산하였다.<sup>12)</sup>

재취업소요기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퇴직(실업)→(실업급여 수급)→취업’까지의 과정을 관찰해야하는데, 전체 조사기간 중 이 과정이 두 번 이상 반복된 사례는 첫 번째 과정 이후에 존재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하고 초기 조건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재취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 관측값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재취업소요기간과 재취업확률은 직업력 자료에서 추출하여 개인용 및 가구용 자료와 결합하였으며, 분석표본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차 조사부터 15차 조사 중 표본에서 탈락한 사례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도 절단사례는 15차년도의 관측시점(2012년 6월)까지 재취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된다. 중도 절단의 경우 재취업소요기간은 퇴직 발생시점부터 관측종료시점인 2012년 6월까지로 계산되며, 이 경우에 재취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

12) 본 연구에서는 이서운(2014)을 참고하여, ‘비자발적 실업’을 이전 일자리에서 퇴직 후 다음 일자리로 곧바로 재취업(이직)하지 못하고 구직활동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로 보았다.

로 추정하게 된다.

분석표본 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력 자료와 개인용 및 가구용 자료를 결합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추출된 표본에서 이전 또는 이후 일자리가 비임금 일자리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퇴직시기와 (재)취업시기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일자리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첫 년도에 조사한 회고적 일자리인 경우에는 연구에 필요한 정보, 즉 설명변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재취업소요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이 음수(-)인 경우를 삭제하였고,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 근로자인 표본들도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분석표본에 포함된 재취업소요기간(Spells)은 총 855개이며, 중도 절단(우측 절단)된 경우는 306개로 나타났다.

[표 5] 분석표본의 도출과정

분석표본수	도출조건
18024개	직업력·개인용·가구용 자료 결합
1049개	실업급여 수급여부로 표본을 추출 (수급자 896명, 비수급자 153명)
939개	비임금 일자리 삭제 (수급자 798명, 비수급자 141명)
930개	퇴직시기·취업시기 결측치 삭제 (수급자 790명, 비수급자 140명)
866개	회고적 일자리 및 실직기간이 음수인 경우 삭제 (수급자 735명, 비수급자 131명)
855개	연령 (만)65세 이상 삭제 (수급자 726명, 비수급자 129명)
총 855개	최종분석표본

### 제3절 연구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정책의 성 분석은 정책의 개발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성(Gender) 관점을 도입하여, 정책이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과정이다. 즉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정책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성 분석은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역할, 책임, 자원, 우선순위 등이 정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성별 분리통계의 수집을 통해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 분석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분석의 틀과 내용은 주로 노동의 성별 분업, 혜택 및 이익의 분배,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성, 이러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 왔지만, 평가 및 분석의 준거로 성(Gender)은 적절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회적 기여도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전통적 차별은 우리 사회 전반과 국가의 공공정책 개발에 잔존하고 있다. 여성들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노동시장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으며, 남성에게 비해 적절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

성 분석은 이와 같은 성 차별적 사회에서 정책개발과 집행이 성 중립적일 수 없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정책에 내재해 있는 성 차별과 성 불평등을 드러내서 인식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동안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Gender)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동안의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정책의 효과성에 집중하고자 한

다. 즉 성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성(Gender) 관점을 도입하여 각 성별에 미친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을 권혁주(2011)에 따라 ‘외적 효과성’과 ‘내적 효과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권혁주(2011)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효과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고용보험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모두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으로서 고용보험의 외연적 포괄범위에 관한 외적 효과성이며, 둘째는 고용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그 제도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으로서 고용보험의 내적 효과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측면을 기준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연구 I : 고용보험의 외적 효과성 분석방법

외적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남녀 성별 분리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적용현황’과 ‘실업급여 수급 및 급여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제도의 적용 및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위치와 노동의 성별분업현황을 살펴보고,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의 적용 및 수급과 관련한 성별현황과 성별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의 대응정도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성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의 외연적 포괄범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연구 II : 고용보험의 내적 효과성 분석방법

내적 효과성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직업력 자료(15차년도)와 개인용 및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도출한 표본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비모수적 최우추정법인 카플란-메이어 방법(Kaplan-Meier method)을 이용하여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재취업 소요기간의 경과에 따른 재취업확률의 변화를 수급자 집단과 비수급자 집단, 그리고 각 성별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를 준모수적 추정방식인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통해 알아보 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재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sup>13)</sup>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으로는 크게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분석 그리고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이 사용되며,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재취업이 발생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과 재취업 발생여부로 종속변수를 추정하는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을 활용할 것이다. 재취업소요기간에 관한 자료에 중도 절단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회귀분석보다는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이 유용<sup>14)</sup>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고용보험 DB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김철희(2004), 윤정향·이시균(2008), 윤정향·이시균(2010), 이서윤(2014), 장지연·호정화(2001), 장지연·은수미(2010), 황덕순 외(2004)의 선행연구들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은 본 논문 제2장 제4절 동태적 노동이동 이론에서 살펴본  $h(t)=h_0(t)\exp(\beta_1x_1+\dots+\beta_kx_k)$  식에 의거하여  $x_1, \dots, x_k$ 의 설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

13) 분석을 위해 활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22이다.

14) 위와 같은 이유 외에도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과 같은 준모수적 분석모형은 실업기간 분포에 대해 특별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수적 분석모형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황덕순 외(2004, p. 48)].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실업탈출분석모형) :  $h(t) = h_0(t)\exp(\beta X)$

(단,  $X$  :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부양자녀 유무, 가구근로소득, 실업급여 수급여부, 이전직장 고용형태)

## 제4절 연구 분석변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성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인 ‘재취업소요기간’과 실업탈출확률인 ‘재취업확률’이다. 또한 설명변수는 인구학적 기본변수와 경제적 여건 변수 및 일자리 특성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재취업확률이다. 재취업 해저드(Hazard)는 재취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단순히 재취업에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실업 후 재취업이라는 상태까지 소요되는 재취업소요기간과 여부’를 모두 측정한다. 재취업소요기간은 실업시기(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퇴직시기로 조사됨)로부터 재취업시기까지의 기간을 월(Month) 단위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실업근로자들의 ‘성별’이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로서 성별이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밖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설명변수들은 개인의 인구학적 기본변수 및 경제적 여건 변수, 일자리 특성으로 구분하여 포함시켰다. 인구학적 기본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설정하였고, 경제적 여건 변수는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부양자녀 유무, 가구근로소득을 설정하였으며, 일자리 특성 변수로는 실업급여 수급여부, 이전직장 고용형태를 포함하였다.<sup>15)</sup>

---

15)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재취업(실업탈출)영향 요인으로 주목했던 변수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은 1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으로 나누었고, 교육수준은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 기타(별거, 이혼, 사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가구주 여부는 가구주일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가구주가 아닐 경우 0의 값을 부여, 가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으며, 부양자녀의 유무는 0세에서 고등학생(재수생)에 해당하는 자녀의 유무로서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가구근로소득은 월평균 가구근로소득으로 측정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 이전직장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고용주,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개인용 자료에서, 부양자녀 유무와 가구근로소득은 개인용 자료와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추출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여부, 이전직장 고용형태는 개인용 자료 및 직업력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sup>16)</sup>

[표 6] 변수의 정의와 측정

종속변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재취업소요기간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 (단위 : 월)	
재취업확률	실업에서 재취업으로의 탈출확률	
설명변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인구학적 기본변수	성별	남성 : 0 여성 : 1
	연령	15~29세 : 1 30~39세 : 2 40~49세 : 3 50세 이상 : 4
	교육수준	고졸미만 : 1

을 정리해보면 비정규직 여부[장지연·호정화(2001); 김교성(2005)], 과거 실업경험[남춘호(2002)], 과거 실업급여 수급여부[Corak(1993)], 과거 일자리 속성[강철희·김교성(1999)], 직업훈련[이병희(2000)], 장기실직여부 및 실업급여수준[Acemoglu and Shimer(1999); Marimon and Zilibotti(1999)] 등이 있다.

16)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설명변수는 실업상태의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고졸 : 2 전문대졸 : 3 대졸이상 : 4
경제적 여건 변수	혼인상태	미혼 : 0 기혼 : 1 기타(별거, 이혼, 사별) : 2
	가구주 여부	가구주 외 : 0 가구주 : 1
	부양자녀 유무	부양자녀 없음 : 0 부양자녀 있음 : 1
	가구근로소득	월평균 가구근로소득 (단위 : 만원)
일자리 특성 변수	실업급여 수급여부	실업급여 비수급자 : 0 실업급여 수급자 : 1
	이전직장 고용형태	정규직 : 0 비정규직 : 1 기타(고용주, 자영업자) : 2

## 제5장 연구결과 I : 고용보험의 외적 효과성

본 연구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효과성을 권혁주(2011)의 기준에 따라 외적 효과성과 내적 효과성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적 효과성은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남녀 성별 분리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의 적용’ 과 ‘실업급여 수급 및 급여수준’ 을 살펴봄으로써,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의 외연적 포괄범위 및 제도적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성 분석(Gender Analysis)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제1절 여성과 노동의 성별분업

성 분석의 차원에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의 외적 효과성을 분석할 때 중요한 점은 여성근로자의 실제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이 남성과 동등하게 이루어지는가[김종숙 외(2004, p. 189)]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적용 및 수급자격에 있어서 남녀 간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확연히 구별되어 여성이 영세사업장 종사, 비정규직, 시간제 등 불안정한 고용지위에 있는 점이 고용보험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차별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고용보험제도 가입과 급여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이 노동시장 참여여부 및 노동시장 내 고용지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여성이 고용보험 내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공식적인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가정에서 수행하는 재생산적 역할 또는 무급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적 성 역할 고정관념과 남녀관계가 변화하고는 있으나, 성별분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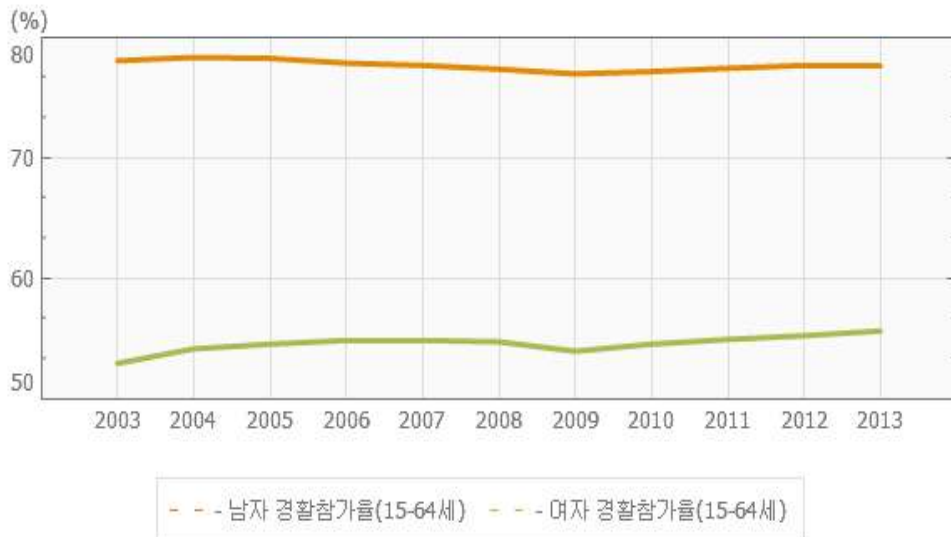
이에 본 절에서는 성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육아, 가사노동 등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을 살펴봄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및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위치와 노동의 성별분업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여성의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 특성

먼저,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등 노동시장 지표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동시장 내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그림 2] 및 [표 7]과 같이 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들어 74%로 2000년 초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51.3%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0의 48.8%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남성의 2014년 경제활동참가율인 7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연간 성별 경활참가율 추이 비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단위 : %)

이처럼 50%정도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가 넘는 OECD 평균 및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로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

는 2000년에 비해 2014년에 감소하였지만 [그림 2]를 통해 여전히 경제활동참여 기회에서부터 뚜렷한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실업률은 3.5%로 2000년의 4.4%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 역시 성별과 무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5.0%, 3.6%에서 2014년 3.6%, 3.5%로 모두 감소하였다.

[표 7] 연도별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남성		여성		여성 실업자 비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2000	4.4	61.2	5.0	74.4	3.6	48.8	33.9
2001	4.0	61.4	4.5	74.3	3.3	49.3	34.3
2002	3.3	62.0	3.7	75.0	2.8	49.8	34.7
2003	3.6	61.5	3.8	74.7	3.3	49.0	37.9
2004	3.7	62.1	3.9	75.0	3.4	49.9	37.9
2005	3.7	62.0	4.0	74.6	3.4	50.1	37.6
2006	3.5	61.9	3.8	74.1	2.9	50.3	35.5
2007	3.2	61.8	3.7	74.0	2.6	50.2	33.9
2008	3.2	61.5	3.6	73.5	2.6	50.0	34.5
2009	3.6	60.8	4.1	73.1	3.0	49.2	34.2
2010	3.7	61.0	4.0	73.0	3.3	49.4	37.2
2011	3.4	61.1	3.6	73.1	3.1	49.7	38.0
2012	3.2	61.3	3.4	73.3	3.0	49.9	38.5
2013	3.1	61.5	3.3	73.2	2.9	50.2	38.3
2014	3.5	62.4	3.6	74.0	3.5	51.3	41.5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단위 : %)

한편, [표 7]을 통해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의 실업률보다 낮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여성의 실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실업을 거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업상태로 규정되는데 필요한 구직할

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sup>17)</sup>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가 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낮은 실업률은 여성을 고용보험제도의 수혜에서 배제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률의 경우 [표 8]에서 나타나듯이 남녀 모두 2000년대 들어 변동폭이 매우 작으며 2014년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49.5%로 남성의 71.4%보다 상당히 낮다.

이처럼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고용수준은 남성에 비해서도,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도 모두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표 8] 성별 고용률

	전체	남성	여성
2000	58.5	70.7	47.0
2001	59.0	71.0	47.7
2002	60.0	72.2	48.4
2003	59.3	71.9	47.4
2004	59.8	72.0	48.3
2005	59.7	71.6	48.4
2006	59.7	71.3	48.8
2007	59.8	71.3	48.9
2008	59.5	70.9	48.7
2009	58.6	70.1	47.7
2010	58.7	70.1	47.8
2011	59.1	70.5	48.1
2012	59.4	70.8	48.4
2013	59.5	70.8	48.8
2014	60.2	71.4	49.5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단위 : %)

이와 같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의 변화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여성취업자와 여성임금근로자의 특징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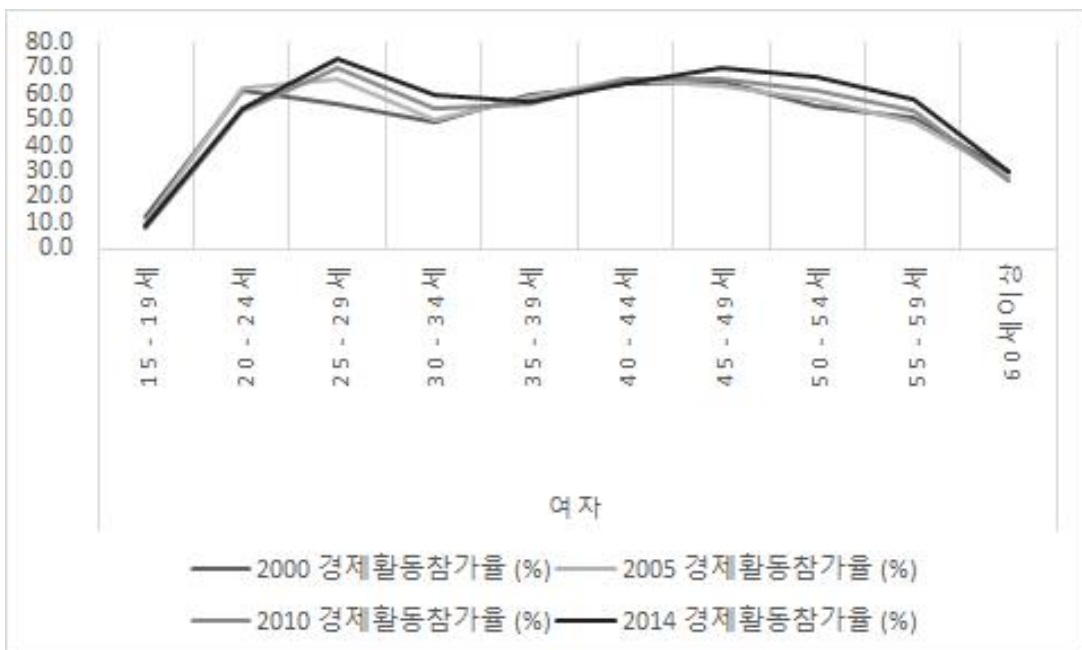
우선 여성노동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M자형(쌍봉형) 경제

17) 이처럼 여성의 구직활동이 저조한 데에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어 '실망실업자'로 표현되기도 한다[김종숙 외(2004, p. 16)].

활동참가율 곡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전반적으로 M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미혼비율이 높은 25~29세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3.4%로 높지만, 29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35~40세에 이르러서는 56.7% 수준으로 낮아진다.

여성의 생애주기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활동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의 재생산적 역할의 수행 여부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M자형 구조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경력 단절 경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여성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여성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서 나타난다. 이는 임시·일용직의 증가로 나타나는 비정규

직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비정규직의 여성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525천명(42.05%), 임시근로자는 2,946천명(27.38%), 일용근로자는 647천명(6.01%)이며, 남성의 경우는 상용근로자가 7,630천명(51.42%), 임시근로자가 2,086천명(14.06%), 일용근로자가 908천명(6.12%)으로 임시 및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수와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곧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율은 남성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표 9] 성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소계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소계	상용	임시	일용
남성	14,839 (100)	4,215 (28.40)	4,061 (27.37)	153 (1.03)	10,624 (71.60)	7,630 (51.42)	2,086 (14.06)	908 (6.12)
여성	10,761 (100)	2,642 (24.55)	1,591 (14.79)	1,051 (9.76)	8,118 (75.44)	4,525 (42.05)	2,946 (27.38)	647 (6.01)
계	25,299 (100)	6,857 (27.10)	5,652 (22.34)	1,205 (4.76)	18,743 (74.09)	12,156 (48.05)	5,032 (19.89)	1,555 (6.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단위 : 천명,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은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과 수급을 제한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실업상태를 경험하기보다는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를 오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근로경향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김종숙 외(2004, pp. 25-26)].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가교(Bridge)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 비정규직 상태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에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보험 내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취약할 것이라는 점을 유추



할 수 있으며, 고용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은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2014년 기준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91천원으로 남성근로자 3,122천원의 67% 수준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의 보험료와 수급액수에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남녀 간 임금격차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수준의 남녀차이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성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성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성	1474	1559	1716	1850	1958	2109	2249
여성	954	1015	1112	1207	1286	1396	1497
여/남	0.65	0.65	0.65	0.65	0.66	0.66	0.6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381	2527	2546	2648	2750	2878	2986	3122
1582	1681	1692	1771	1862	1958	2032	2091
0.66	0.67	0.66	0.67	0.68	0.68	0.68	0.6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단위 : 천원)

## 2. 여성의 가사노동 현황

여성의 자녀 양육 현황은 [표 11]의 만 10세 이하 자녀 양육실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자녀의 양육실태를 보면, 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은 2002년 62.6%에서 2005년 60.5%로 낮아졌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아졌으며 조부모, 가족 및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비율은 2002년 14.8%에서 2005년에 17%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은 60%가 넘으며 이때의 부모는 어머니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녀 양육의 부담은 부모 중 어머니인 여성이 전적으로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의 통계를 보면 여성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59.4%)뿐만 아니라 전일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27%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와 가정 내에서의 자녀 양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자녀 양육실태(복수응답)

	부모	조부모	가족 친인척	탁아모 가정부	혼자, 아동 끼리	유치원	보육 시설	학원	방과 후 교실
2002									
계	62.6	-	14.8	1.0	-	5.3	7.5	14.1	-
어머니 (보호자)									
취업	34.6	-	26.7	2.1	-	8.8	12.7	24.8	-
가사	52.0	-	9.5	-	-	16.0	5.1	15.7	-
2005									
계	60.5	14.2	2.8	1.0	9.2	13.8	14.0	33.1	4.4
어머니 (보호자)									
전일제	27.0	27.6	5.2	2.1	17.5	12.7	17.3	38.1	6.9
시간제	59.4	13.1	3.1	0.9	11.2	15.6	12.8	43.0	6.1
전업 주부	85.0	4.0	1.1	0.3	2.7	14.4	11.5	28.7	2.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단위 : %)

또한 여성과 남성의 가사분담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외벌이(남편)가구의 경우 아내가 가사분담(가정관리)의 99.3%, 남편이 41.4%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벌이(아내)가구의 경우에도 아내가 가사노동의

94.0%, 남편이 78.6%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 역시 아내가 97.1%, 남편이 46.0%의 가사노동을 담당<sup>18)</sup>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 여성근로자의 경우 직장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가구 및 성별 가사분담(요일평균)

	맞벌이가구		외벌이(남편)가구		외벌이(아내)가구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개인유지 <sup>19)</sup>	10:59	10:51	11:04	11:10	11:44	10:57
일 <sup>20)</sup>	7:16	6:13	7:11	1:53	1:56	6:30
학습 <sup>21)</sup>	2:15	1:45	1:54	3:06	3:37	1:18
가정관리 <sup>22)</sup>	1:01	2:43	1:06	4:14	1:49	2:34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sup>23)</sup>	1:04	1:27	1:13	2:49	1:24	1:05
참여 및 봉사활동 <sup>24)</sup>	1:48	2:04	1:43	1:59	2:01	2:38
교제 및 여가활동 <sup>25)</sup>	3:53	3:09	3:53	4:53	8:29	3:17
이동 <sup>26)</sup>	2:04	1:40	2:11	1:33	1:37	1:39
기타 <sup>27)</sup>	0:23	0:25	0:21	0:25	0:26	0:25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 (단위 : 시간, %)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참가는 증

18) [표 12]의 가사분담시간은 행위자 평균시간으로서 특정행동을 한 사람(행위자)들의 평균시간을 의미하며, 가사분담비율은 행위자 비율로서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19) 개인유지 :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20) 일 :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구직활동.

21) 학습 : 학교활동, 학교활동 외 학습.

22) 가정관리 :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애완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23)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함께 사는 만 10세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

24) 참여 및 봉사활동 : 참여활동, 자원봉사, 친분 있는 사람 돕기.

25) 교제 및 여가활동 :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 활동, 문화 및 관광 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

26) 이동 : 개인유지 관련 이동, 일 관련 이동, 학습 관련 이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관련 이동, 기타 이동관련 활동.

27) 기타 : 기타 분류되지 않는 행동

가하였으나 무급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연령별로 M자형 경제활동참가율곡선을 보이는데,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재생산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상용직 고용비율이 낮고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임금 역시 남성보다 낮아서 2014년 기준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67%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더라도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도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남성에 비해 낮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영세사업장 및 일용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현행 정책만으로는 여성을 고용보험제도로 완전히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가입기간, 보험료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취약성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성에 비해 취약한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는 고용보험에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에 대한 고용보험의 급여수준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육아 및 가사노동 등 노동의 성별분업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노동시장의 지위가 반영되는 고용보험체계를 감안할 때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해도 고용지위가 취약하여 독립적인 수급권자로서는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고, 육아 및 가사노동 등의 역할수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지위 유지가 어려워 피부양자로서 부양자인 남성에 종속되는[박영란 외(2001, pp. 59-82)]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제2절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제도 적용현황

본 절에서는 여성 노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김은하 외(2010)에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 분석틀을 활용하여, 여성이 고용보험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이 수행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직 시에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신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수혜자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은하 외(2010, p. 248)].

먼저 [표 13]을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11,571,21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남성이 6,971,699명으로 60.2%, 여성은 4,599,514명으로 3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up>28)</sup>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별 비중을 보면, 2000년 이후로 여성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여성이 전체 피보험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피보험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전체 여성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하기보다 2004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본격화되어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여성근로자의 가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로 평가[김종숙(2005, p. 109)]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보험은 가입 그 자체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중소기업 근로와 비정규직 근로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 피보험자는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피보험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28) 2015년 9월 현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다소 조정되어 남성은 59.05%, 여성은 40.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	남성		여성	
	피보험자(A)	피보험자(B)	B/A*100	피보험자(C)	C/A*100
2000	6,747,263	4,633,208	68.7	2,114,055	31.3
2001	6,908,888	4,712,338	68.2	2,196,550	31.8
2002	7,171,277	4,832,458	67.4	2,338,819	32.6
2003	7,203,347	4,812,794	66.8	2,390,553	33.2
2004	7,576,856	5,020,208	66.3	2,556,648	33.7
2005	8,063,797	5,306,621	65.8	2,757,176	34.2
2006	8,536,966	5,576,869	65.3	2,960,097	34.7
2007	9,063,301	5,853,703	64.6	3,209,598	35.4
2008	9,385,239	6,011,120	64.0	3,374,119	36.0
2009	9,653,678	6,083,853	63.0	3,569,825	37.0
2010	10,131,058	6,310,423	62.3	3,820,635	37.7
2011	10,675,437	6,569,800	61.5	4,105,637	38.5
2012	11,152,354	6,784,700	60.8	4,367,654	39.2
2013	11,571,213	6,971,699	60.2	4,599,514	39.8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단위 : 명, %)

다음으로 고용보험가입의 주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2013년 임금근로자 수는 18,194천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1,57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은 63.59%로 나타난다.

또한 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피보험자의 비중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10%p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임금근로자 중 남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이 2014년에 발표한 ‘2014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남성근로자의 ⅔수준이며, 남성은 임금근로자 중 74.1%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달리 여성은 임금근로자 중 61.9%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성별 임금근로자 및 피보험자

연도	남성			여성		
	근로자(A)	피보험자(B)	B/A*100	근로자(C)	피보험자(D)	D/C*100
2000	7963	4633	58.18	5397	2114	39.17
2001	8050	4712	58.53	5609	2196	39.15
2002	8325	4832	58.04	5857	2338	39.92
2003	8432	4812	57.07	5970	2390	40.03
2004	8657	5020	57.99	6237	2556	40.98
2005	8794	5306	60.34	6391	2757	43.14
2006	8978	5576	62.11	6573	2960	45.03
2007	9214	5853	63.52	6756	3209	47.50
2008	9338	6011	64.37	6868	3374	49.13
2009	9498	6084	64.05	6955	3570	51.33
2010	9740	6310	64.78	7230	3820	52.83
2011	9970	6570	65.89	7428	4106	55.27
2012	10094	6785	67.21	7619	4368	57.33
2013	10353	6971	67.33	7841	4599	58.65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단위 : 천명, %)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여성근로자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성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58.65%에 불과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가입률 67.33%와도 9%p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표 15]에는 각 년도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제시되어 있다.<sup>29)</sup> 전체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성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 기준 여성 취득자의 비중은 남성 취득자의 비중보다 약 7%p 낮다.

그러나 성별 피보험자 대비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수치는 다른 양상을 제시한다.<sup>30)</sup> [표 15]를 보면 전체 피보험자 대비 신규 피보험자의

29)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를 제외한 다.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을 처음으로 취득한 신규 취득자와, 과거에 취득한 경험이 있어 최초 취득자가 아닌 경력 취득자 등으로 구성된다[김은하 외(2010, p. 249)].

30) 본 표에서의 피보험자는 일반적인 피보험자의 정의, 즉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와 신규로 피보험자격이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비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약 6~7%p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7%p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근로자가 몰려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 점 및 여성근로자의 높은 실직 위험에 따른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의 반복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성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연도	전체 (A)	남성 취득자 (B)	여성 취득자 (C)	남성 피보험 자(D)	여성 피보험 자(E)	B/A *100	C/A *100	B/D *100	C/E *100
2000	3692	2304	1392	6937	3505	62.34	37.66	33.21	39.69
2001	3435	2150	1285	6862	3481	62.59	37.41	31.33	36.91
2002	3693	2261	1431	7093	3770	61.23	38.77	31.88	37.96
2003	3450	2080	1370	6892	3760	60.29	39.71	30.18	36.44
2004	3765	2228	1537	7248	4094	59.17	40.83	30.74	37.54
2005	4264	2517	1747	7823	4504	59.03	40.97	32.17	38.79
2006	4429	2582	1847	8158	4807	58.30	41.70	31.65	38.42
2007	4642	2651	1991	8504	5200	57.11	42.89	31.17	38.29
2008	4839	2746	2092	8757	5466	56.76	43.24	31.36	38.27
2009	5177	2837	2339	8920	5908	54.80	45.20	31.80	39.59
2010	5601	3050	2550	9360	6370	54.45	45.55	32.58	40.03
2011	5946	3218	2728	9787	6833	54.12	45.88	32.88	39.92
2012	6045	3245	2800	10029	7167	53.68	46.32	32.35	39.06
2013	6075	3252	2823	10223	7422	53.53	46.47	31.81	38.03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단위 : 천명, %)

한편,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고용보험에 등록되었다가 자격이 상실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피보험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일자리로 이직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의 [표 16]을 보면 남성 상실자는 여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체 상실자 중에서 남성이 54.13%, 여성이 45.87%로 양 집단 간 차이가 약 8%p로 좁혀졌다. 성별 피보험자 중에서 상실자의 비중을 보



면<sup>31)</sup>, 2000년부터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의 비중에서 남성은 30% 안팎, 여성은 35%안팎을 차지한다. 2013년에는 과거 피보험자였던 상실자를 포함한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의 비중에서 남성은 30.36%, 여성은 35.90%로 5.5%p의 차이를 보이면서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표 16] 성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연도	전체 (A)	남성 상실자 (B)	여성 상실자 (C)	남성 피보험 자(D)	여성 피보험 자(E)	B/A *100	C/A *100	B/D *100	C/E *100
2000	2981	1894	1088	6527	3202	63.52	36.48	29.02	33.98
2001	3238	2038	1197	6750	3393	63.00	37.00	30.19	35.28
2002	3405	2124	1280	6956	3618	62.39	37.61	30.53	35.38
2003	3394	2084	1311	6896	3701	61.38	38.62	30.22	35.42
2004	3364	1999	1365	7019	3921	59.42	40.58	28.48	34.81
2005	3721	2193	1528	7499	4285	58.94	41.08	29.24	35.66
2006	3895	2273	1622	7849	4582	58.35	41.65	28.96	35.40
2007	4061	2339	1722	8192	4931	57.61	42.39	28.55	34.92
2008	4453	2548	1905	8559	5279	57.21	42.79	29.77	36.09
2009	4722	2647	2075	8730	5645	56.06	43.94	30.32	36.76
2010	5112	2817	2295	9127	6115	55.11	44.89	30.86	37.53
2011	5392	2949	2443	9519	6548	54.69	45.31	30.98	37.31
2012	5590	3039	2551	9824	6919	54.36	45.64	30.93	36.87
2013	5616	3040	2576	10012	7175	54.13	45.87	30.36	35.90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단위 : 천명, %)

[표 15]와 [표 16]을 비교하면, 취득자를 포함한 피보험자 대비 취득자의 비중이나 상실자를 포함한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의 비중 모두 여성이 높다. 이러한 수치를 감안하면 여성들이 안정적인 피보험자 신분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 즉 여성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피보험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새롭게 부여받다가 피보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다시 갱신될 확률이 높다고 해석된다.

고용보험통계연보 2013년도 자료를 통해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31) 여기에서의 피보험자는 과거 피보험자인 상실자를 포함한다.

살펴보면 [표 17]과 같이 남성의 경우는 ‘기타 개인사정’ 이 약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그 다음이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으로 약 14%, ‘계약기간 만료’ 로 인한 상실이 약 14%를 차지한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기타 개인사정’ 으로 인한 상실이 약 4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계약기간 만료’ 로 약 20%이다. 그리고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이 약 15%, ‘전직, 자영업’ 으로 인한 상실이 약 7.7%를 차지한다.

[표 17] 성별 상실사유(이직사유)

상실사유		남성	여성
자발	전직, 자영업	372,691(12.25)	198,045(7.69)
	결혼, 출산 등	15,175(0.50)	63,933(2.48)
	징계, 해고	4,051(0.13)	1,294(0.05)
	기타 개인사정	1,515,724(49.85)	1,178,445(45.74)
비자발	질병, 부상, 노령 등	33,621(1.10)	50,556(1.96)
	폐업, 도산, 공사중단	96,043(3.16)	106,441(4.1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29,584(0.97)	23,198(0.90)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 변동	21,937(0.72)	19,059(0.74)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441,744(14.53)	383,817(14.89)
	정년퇴직	23,170(0.76)	8,227(0.32)
	계약기간 만료	425,502(13.99)	505,645(19.63)
기타	공사종료	35,752(1.18)	11,865(0.46)
	고용보험 비적용	16,391(0.54)	17,301(0.67)
	이중고용	4,494(0.15)	4,709(0.18)
	분류불능	4,438(0.14)	3,593(0.14)
계		3,040,317(100)	2,576,128(100)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2013) (단위 : 명, %)

상실사유에서 두 집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로서 두 집단은 약 6%p의 차이를 보이며, 사유의 성격상 상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반면, 남성은 ‘전직, 자영업’ 으로 상실하는 경우가 여성보다 4.5%p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피보험자격 상실이 일차리의 변경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한편, 여성은 ‘결혼, 출산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2.48%로 남성의 0.5%보다 약 5배 높게 나타나 남성근로자와는 다른 여성근로자의 사회구조적 상황이 드러난다. 결국 여성들의 가정 내 성역할이 여성들을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여성근로자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25.62%, 2000년 37.65%였던 비율이 2002년에는 40%가 넘었으며, 2004년 이후에는 45%전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2013)].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여성의 비중 증가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sup>32)</sup>과 최근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많은 실직 여성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유지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 18]에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성별 수급자격자의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 신청자 중 소정의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를 뜻한다. [표 18]을 보면 2000년 이후 여성의 수급자격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남성이 50.92%, 여성이 49.08%를 차지하여 양 집단의 차이는 약 1.8%p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 수급자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06년 이후 여성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중<sup>33)</sup>은 10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06년에 남성은 86.12%, 여성은 127.89%, 2013년에는 남성이 93.97%, 여성이 145.95%로<sup>34)</sup> 실업자 대비 수급자격자의 비중에서 여성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비해 여성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여성근로자의 실업 가능성도 높은 이중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

32) 김은하 외(2010, pp. 240-241).

33)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해 소정의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34) 실업자가 수급자격자를 초과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실업자 수 측정의 문제점과 조사 시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업자 수는 특정 시점의 통계인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연인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김은하 외(2010, p. 252)].

[표 18]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연도	전체 (A)	남성 수급자 (B)	여성 수급자 (C)	남성 실업자 (D)	여성 실업자 (E)	B/A *100	C/A *100	B/D *100	C/E *100
2000	259	161	97	647	332	62.35	37.65	24.88	29.22
2001	347	214	133	591	308	61.68	38.32	36.21	43.18
2002	297	176	121	491	261	59.27	40.73	35.85	46.36
2003	375	212	163	508	310	56.48	43.52	41.73	52.58
2004	468	256	212	534	326	54.68	45.32	47.94	65.03
2005	562	309	253	553	334	54.99	45.01	55.88	75.75
2006	610	335	275	533	294	54.89	45.11	86.12	127.89
2007	685	373	312	517	266	54.48	45.52	64.80	103.38
2008	835	459	376	505	265	55.02	44.98	90.89	141.89
2009	1068	628	440	584	304	58.80	41.20	107.53	144.73
2010	973	539	434	577	342	55.39	44.61	93.41	126.90
2011	902	484	418	530	325	53.66	46.34	91.32	128.61
2012	898	471	427	504	316	52.45	47.55	93.45	135.12
2013	919	468	451	498	309	50.92	49.08	93.97	145.95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단위 : 천명, %)

따라서 이와 같은 ‘여성의 실업’을 판단할 때는 ‘남성의 실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성 실업자의 경우에는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 기반이 취약하여 취업여건이나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실업상태에 머무르기보다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이나 재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결국은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가 되어 공식적인 실업인구에 반영되지 않는 여성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실업급여제도 수급현황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며 비중도 가장 크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노동경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두순(2007)은 남성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6.57년인 반면, 여성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15년으로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2배 이상 길다고 보고한다. 금재호 외(1988)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여성은 80.5%로, 남성의 64.9%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하다. 일반적으로 여성근로자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일용직에 몰려있기 때문에 남성근로자보다 고용불안정을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 노동과 정규 노동 간의 이동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 노동자들은 일시적, 과도기적 취업형태로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가교형(Bridge)이 아니라 고령자, 미숙련, 저학력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한번 비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빠져 나오지 못하는 함정형(Trap)에 속한다고 한다[이병훈·윤정향(2001, p. 27)]. 장지연 외(2001)에서도 여성은 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로 미취업기간을 탈출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비정규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탈출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up>35)</sup>

이상의 상황을 반영하듯, 남성은 구직급여 수혜인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은 전체 구직급여 수혜인원의 5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혜건수, 수혜금액에서

---

35)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구직활동이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성보다 낮고, 여성이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은 남성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 각각 50.97%, 52.95%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여성보다 더 많은 남성이 구직급여를 통한 혜택을 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실업급여 세부 프로그램별 현황

	수혜인원			수혜건수			수혜금액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구직 급여	591,84 4 (50.91)	570,54 3 (49.09)	1,162,3 87 (100)	2,320,4 36 (50.57)	2,267,8 26 (49.43)	4,588,2 62 (100)	1,860,5 65,729, 630 (51.52)	1,750,8 49,467, 780 (48.48)	3,611,4 15,197, 410 (100)
상병 급여	3,785 (51.50)	3,564 (48.50)	7,349 (100)	6,920 (54.65)	5,742 (45.35)	12,662 (100)	6,694,1 71,670 (55.82)	5,297,0 77,150 (44.18)	11,991, 248,82 0 (100)
조기 재취 업수 당	79,136 (65.68)	41,350 (34.32)	120,48 6 (100)	79,137 (65.68)	41,350 (34.32)	120,48 7 (100)	188,71 0,804,2 20 (72.68)	70,919, 928,21 0 (27.32)	259,63 0,732,4 30 (100)
광역 구직 활동 비	2 (66.67)	1 (33.33)	3 (100)	2 (66.67)	1 (33.33)	3 (100)	99,200 (89.69)	11,400 (10.31)	110,60 0 (100)
직업 능력 개발 수당	3 (75)	1 (25)	4 (100)	5 (35.71)	9 (64.29)	14 (100)	440,00 0 (25.88)	1,260,0 00 (74.12)	1,700,0 00 (100)
이주 비	174 (84.46)	32 (15.54)	206 (100)	174 (84.46)	32 (15.54)	206 (100)	237,03 4,740 (86.40)	37,294, 490 (13.60)	274,32 9,230 (100)
계	675,16 4 (52.31)	615,52 2 (47.69)	1,290,6 86 (100)	2,406,8 96 (50.97)	2,314,9 91 (49.03)	4,721,8 87 (100)	2,056,3 77,534, 780 (52.95)	1,827,1 29,661, 600 (47.05)	3,883,5 07,196, 380 (100)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2013) (단위 : 명, 건, 원, %)

다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아있으며 6개월 이상 고용

되는 경우<sup>36)</sup> 소정일수에 따라서 미지급분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실직자의 구직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를 갖는다.

[표 19]를 보면, 2013년 기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수급자 중 남성은 65.68%, 여성은 34.32%를 차지하여 남성이 전체 수혜인원의 약 ⅔를 차지한다. 수혜 건수와 수혜금액도 남성은 각각 65.68%, 72.68%, 여성은 각각 34.32%, 27.32%로 나타나 남성의 비중이 높다. 결과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에 있어서도 더 많은 남성이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7)</sup>

조기재취업수당의 수혜를 받는 실업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수급조건 때문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 ②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④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⑤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일이 입사 당일로 동일하게 신고 되어있어야 한다. ⑥일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한 사업주, 동일 공정에서 6월(180일)이상 근로해야 한다[고용노동부(2015)]. 특히 6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 조건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인 여성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4대보험이 하나라도 제공되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가 전체의 45.3%나 되며, 여성들이 몰려있는 비정규직에서 4대보험이 하나라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71.7%인 현실에서[박수미 외(2008)]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규정은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

---

36) 20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½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37) 유길상(2007)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확률이 여성보다 높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언급하고 있다.

건이다.

한편,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자의 재취업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극복하고, 구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 활동을 한 거리 및 숙박 수에 따라 운임 및 숙박료를 지급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표 19]를 보면, 광역구직활동비의 수혜인원, 수혜건수, 수혜금액에서도 남성의 비중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육아나 가사 때문에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광역구직활동비는 지역을 초월한 구직노력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수급조건에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친족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을 위해 여성과 동거하는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가사와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주비의 수혜자는 절대 다수가 남성일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2013년 기준 이주비 수혜인원의 84.46%, 수혜건수의 84.46%, 수혜금액의 86.40%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수혜금액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실업급여제도 예산에서 남성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제4절 실업급여제도 급여수준

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한다. [표 20]에는 성별 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일액별 수급자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6만 원 이상을 받는 실업자는 43.8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성별로 분리해서 본 결과는 조금 다르다. 남성 중 6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약 60%로 절반이 넘는 반면, 여성은 27%에 머물고 있어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만 원 이하를 받는 수급자 역시 남성은 0.23%, 여성은 1.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0] 성별·실업급여 기초임금일액별 수급자 비율

	계	2만원 이하	2~4만원	4~6만원	6~8만원	8만원 초과
계	919,118 (100)	6,486 (0.71)	220,840 (24.03)	288,520 (31.39)	171,106 (18.61)	232,166 (25.26)
남성	468,438 (100)	1,079 (0.23)	68,761 (14.68)	117,574 (25.10)	97,766 (20.87)	183,258 (39.12)
여성	450,680 (100)	5,407 (1.20)	152,079 (33.74)	170,946 (37.93)	73,340 (16.27)	48,908 (10.85)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2013) (단위 : 명, %)

이와 같이 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일액이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이다. [표 21]을 보면, 2000년부터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은 0.65~0.68을 유지하여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성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성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	1474	1559	1716	1850	1958	2109	2249
여	954	1015	1112	1207	1286	1396	1497
여/남	0.65	0.65	0.65	0.65	0.66	0.66	0.6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381	2527	2546	2648	2750	2878	2986	3122
1582	1681	1692	1771	1862	1958	2032	2091
0.66	0.67	0.66	0.67	0.68	0.68	0.68	0.6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단위 : 천원)

한편, [표 22]와 같이 기초임금일액별로 성별을 나누고 그 비중을 보면, 수급액이 2만 원 이하인 남성은 16.63%를 차지하지만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비중은 점점 커져 6만 원 이상(6~8만원 및 8만원 초과)을 수급하는 남성은 2%가 훨씬 넘는 69.69%를 차지한다. 반면, 2만 원 이하의 수급액을 받는 여성은 83%가 넘는다.

[표 22] 성별 실업급여 기초임금일액 수급자 비율

구분	2만원 이하	2~4만원	4~6만원	6~8만원	8만원 초과
남성	16.63	31.14	40.75	57.14	78.93
여성	83.37	68.86	59.25	42.86	21.07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고용보험통계연보(2013) (단위 : %)

이러한 수치는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액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sup>38)</sup>, 성별로는 그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혜택을 받더라도,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며, 실업급여를 통한 실직 여성들의 생계유지 및 구직활동은 실직 남성보다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38) 실업급여의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액수를 보장하며, 최고액은 이직일이 2015년 이후인 경우 1일 4만 3천원, 2006년 이후는 1일 4만원, 2006년 이전은 3만 5천원이다.

## 제5절 소결

성별 분리통계를 활용하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제도의 적용과 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피보험자 현황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피보험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피보험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피보험자의 비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취득자를 포함한 피보험자 대비 취득자의 비중과 상실자를 포함한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의 비중 모두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여성들은 안정적인 피보험자 신분에 속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피보험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보다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오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해석된다.

2000년 이후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중에서 여성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비해 여성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여성근로자의 실업 가능성도 높은 이중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들이 그만큼 실업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실업은 남성의 실업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실업자 통계만으로 여성 실업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구직을 포기하는 여성들과, 가사나 육아의 부담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39)</sup>

---

39) 당장이라도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망실업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사, 육아, 돌봄 노동, 출산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된 여성들을 포함하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수급현황 분석에서는 노동경력을 지속하기 어렵고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여성근로자의 현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수혜인원, 수혜건수, 수혜금액 모두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여성들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현실은 실업급여에 그대로 반영되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업급여수준이 낮고, 낮은 금액에 여성 수급자 대부분이 몰려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통한 실직 여성들의 생계유지 및 구직활동은 실직 남성보다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가입이나 실업급여의 수급권 측면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홍찬숙 외(2010)가 지적하듯 임금 및 고용지위에서 성별 분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현실,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실망실업자들의 존재, 임신·출산·돌봄 노동 등 여성의 부담을 고려할 경우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의 설계나 실제 예산의 배분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외적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재취업소요기간과 재취업확률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 제6장 연구결과 II : 고용보험의 내적 효과성

### 제1절 연구 분석대상의 기초통계

[표 23]에 의하면 재취업소요기간 표본은 총 855개이며, 이중 남성이

---

면 여성실업자는 공식적인 실업자 수치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이다[김혜란 외(2009, pp. 53-54)].

51.2%로서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서는 30~39세의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의 비율이 가장 높다. 혼인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미혼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구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 가구의 근로소득은 평균 245.608(만원)정도로 나타나며, 실업급여 수급자인 표본이 비수급자에 비해 많고, 이전직장의 고용형태가 정규적인 경우가 8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3] 재취업효과 분석의 주요 변수 기초통계

종속변수		정의	빈도	
재취업소요기간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 (단위 : 월)	855개	
설명변수		정의	빈도	비중
인구학적 기본변수	성별	남성	438	51.2
		여성	417	48.8
	연령	15~29세	199	23.3
		30~39세	268	31.3
		40~49세	159	18.6
		50세 이상	229	26.8
	교육수준	고졸미만	163	19.1
		고졸	300	35.1
		전문대졸	188	22.0
		대졸이상	203	23.7
경제적여건 변수	혼인상태	미혼	160	18.7
		기혼	607	71.0
		기타(별거, 이혼, 사별)	88	10.3
	가구주 여부	가구주 외	377	44.1
		가구주	478	55.9
	부양자녀 유무	부양자녀 없음	522	61.1
		부양자녀 있음	333	38.9
가구근로소득	월평균 가구근로소득 (단위 : 만원)	평균 : 245. 6080		
일자리특성 변수	실업급여 수급여부	실업급여 비수급자	129	15.1
		실업급여 수급자	726	84.9
	이전직장 고용형태	정규직	701	82.0
		비정규직	116	13.6
		기타(고용주, 자영업자)	38	4.40

(단위 : 개, %)

연구 분석대상의 기초통계를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주요 변수 성별 분리 기초통계(평균)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재취업소요기간 (단위 : 월)		12.7614	11.8973	13.6691
경제적여건 변수	가구주 여부	0.5591	0.8721	0.2302
	부양자녀 유무	0.3895	0.3744	0.4053
	가구근로소득	245.6080	230.5671	260.3211
일자리특성 변수	실업급여 수급여부	0.8491	0.8425	0.8561

연구 분석대상을 성별로 분리하여 기초통계의 평균을 도출한 결과, 전체 재취업소요기간은 평균 12.7614개월로 나타났으며, 우측 절단된 불완전한 관찰 값(계속 실업상태인 경우)이 있으므로 실제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은 이보다 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여부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구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남성과 여성 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 제2절 연구 II-1 : 카플란-메이어 분석을 통한 재취업 효과

본 절에서는 비모수적 최우추정법인 카플란-메이어(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하여 재취업소요기간과 재취업소요기간의 경과에 따른 재취업확률(조건부 실업탈출확률)의 변화를 성별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sup>41)</sup>

40) 설명변수가 0 또는 1로 측정된 가구주 여부, 실업급여 수급여부 등의 평균만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설명변수들의 경우 단순평균으로 설명할 수 없어 [표 17]에서 제외하였다.

41) 분석을 위해 활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22이다.

## 1.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재취업소요기간

[표 25]는 실업급여 비수급자와 수급자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을 주요 변수별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 재취업소요기간은 12.7614개월로 나타났고,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평균 11.3488개월, 수급자는 평균 13.0124개월로 나타나 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sup>42)</sup>

[표 25]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재취업소요기간(평균)

		전체	실업급여 비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성별	남성	11.8973	10.6957	12.1220
	여성	13.6691	12.1000	13.9328
연령	15~29세	13.4673	11.9333	13.7396
	30~39세	12.4925	10.4000	12.8596
	40~49세	11.4025	11.3462	11.4135
	50세 이상	13.4061	11.9697	13.6480
교육수준	고졸미만	12.7669	13.0000	12.7185
	고졸	12.5200	10.0417	12.9921
	전문대졸	13.7128	12.4583	13.8963
	대졸이상	12.2365	11.0000	12.4425
혼인상태	미혼	13.2562	11.1739	13.6058
	기혼	12.4498	10.7660	12.7583
	기타	14.0114	16.2500	13.6579
가구주 여부	가구주 외	13.4562	12.3571	13.6480
	가구주	12.2134	10.5753	12.5086
부양자녀 유무	부양자녀 없음	13.2912	12.0617	13.5170
	부양자녀 있음	11.9309	10.1458	12.2316
이전직장 고용형태	정규직	12.6262	10.7524	12.9564
	비정규직	14.0948	13.4118	14.2121
	기타	11.1842	15.2857	10.2581
전체		12.7614	11.3488	13.0124

(단위 : 월)

성별로 재취업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남성은 11.8973개월, 여성은

42)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p-value)이 0.051로서, 유의수준( $\alpha$ )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같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3.6691개월로 나타나 남성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더 짧았으며, 비수급자와 수급자 남성 모두 여성보다 재취업소요기간이 짧았고, 성별 전체로는 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비수급자보다 길게 나타나 전체 표본의 경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재취업소요기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0~49세의 재취업소요기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40~49세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여부에 따른 재취업소요기간의 차이도 가장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30~39세의 재취업소요기간이 가장 짧고, 수급자의 경우에는 40~49세의 재취업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급자와 수급자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재취업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재취업소요기간은 대졸이상이 가장 짧았으나, 비수급자는 고졸계층, 수급자는 대졸이상의 계층에서 재취업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혼인상태에서는 전체, 비수급자, 수급자 집단 모두 기혼인 경우의 재취업소요기간이 가장 짧았으며, 가구주 여부에서는 가구주인 경우가 재취업소요기간이 더 짧았고, 가구주 및 가구주 외의 경우 모두 비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수급자에 비해 짧게 나타났다. 부양자녀 유무 역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전체, 비수급자, 수급자 집단 모두에서 재취업소요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급여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재취업소요기간이 더 짧음을 알 수 있다. 이전직장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이었던 경우가 비정규직이었던 경우에 비해 재취업소요기간이 짧았으며, 비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수급자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별 재취업소요기간

[표 26]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여성의 재취업소요기간은 13.6691개월로 남성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 11.8973개월보다 길게 나타난다.<sup>43)</sup>

---

43) 성별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



[표 26] 성별 재취업소요기간(평균)

		전체	남성	여성
연령	15~29세	13.4673	11.9538	14.2015
	30~39세	12.4925	10.7832	14.4480
	40~49세	11.4025	10.9875	11.8228
	50세 이상	13.4061	13.4200	13.3797
교육수준	고졸미만	12.7669	11.8235	13.7949
	고졸	12.5200	12.4906	12.5532
	전문대졸	13.7128	11.7294	15.3495
	대졸이상	12.2365	11.2202	13.4149
혼인상태	미혼	13.2562	12.6173	13.9114
	기혼	12.4498	11.4623	13.5363
	기타	14.0114	13.9487	14.0612
가구주 여부	가구주 외	13.4562	12.9107	13.5514
	가구주	12.2134	11.7487	14.0625
부양자녀 유무	부양자녀 없음	13.2912	12.9015	13.7218
	부양자녀 있음	11.9309	10.2195	13.5917
실업급여 수급여부	실업급여 비수급자	11.3488	10.6957	12.1000
	실업급여 수급자	13.0124	12.1220	13.9328
이전직장 고용형태	정규직	12.6262	11.7882	13.5793
	비정규직	14.0948	12.5854	14.9200
	기타	11.1842	12.4167	9.0714
전체		12.7614	11.8973	13.6691

(단위 : 월)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와 50세 이상의 연령층의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은 성별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15~29세, 30~39세의 연령층의 경우 여성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에 비해 2개월(30~39세의 경우 3개월)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재취업소요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재취업소요기간이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남성이 대졸이상에서 재취업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과 달리, 여성은 고졸수준에서 재취업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에 있어서 여성은 미혼과 기혼을 막론하

(p-value)이 0.03으로서, 유의수준( $\alpha$ )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같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고, 각 집단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다르다는 대립가설이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고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보다 길며, 부양자녀가 있는 남성은 재취업소요기간이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짧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재취업소요기간도 길고 부양자녀 유무에 따른 재취업소요기간 차이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전직장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비정규직에 비해 짧고, 특히 남성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여성보다 재취업소요기간이 짧게 나타난다.

이처럼 성별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을 살펴본 결과, 주로 전문대졸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 이전직장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었던 여성 그리고 30~39세의 여성의 재취업소요기간이 특징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선행연구 및 외적 효과성 분석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30~39세의 연령층에서 결혼·임신·출산·돌봄 노동 등으로 재취업이 제약되고, 이전 직장이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재취업이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ер 분석결과 : 전체

[표 27]에서부터 [표 35]까지는 재취업소요기간이 24개월(2년) 이내 시점까지의 재취업추정결과를 전체, 실업급여 수급여부, 성별, 성별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별로 제시한 것이다. 재취업확률은 특정 시점에 이르기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한 표본(Spell) 중 특정 시점에서 재취업으로 탈출하는 표본의 조건부 실업탈출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의 [표]에서 누적 재취업은 실업상태를 탈출한 표본의 누적 개수를 의미하며 누적 재취업확률은 누적 조건부 탈출확률을 의미한다.

한편, 분석에 있어서 재취업소요기간의 최대를 24개월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재취업소요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도 절단(우측 절단)된 관측치로 분류된다.

다음의 [표 27]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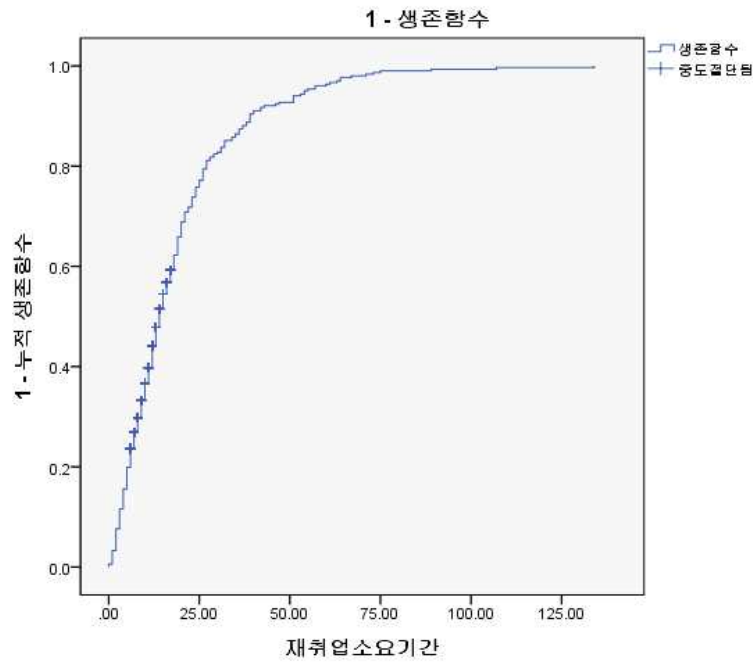
[표 27]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 전체

재취업소요기간	전체		
	재취업소요기간 Spell	누적재취업	누적재취업확률
0개월	850	5	0.006
1개월	827	28	0.033
2개월	790	65	0.076
3개월	756	99	0.116
4개월	722	133	0.156
5개월	685	170	0.199
6개월	653	202	0.236
7개월	589	228	0.269
8개월	542	251	0.298
9개월	494	276	0.332
10개월	453	301	0.367
11개월	408	322	0.398
12개월	360	350	0.441
13개월	309	372	0.479
14개월	267	392	0.515
15개월	227	407	0.545
16개월	192	417	0.568
17개월	147	426	0.592
18개월	114	435	0.622
19개월	103	446	0.659
20개월	94	455	0.689
21개월	88	461	0.708
22개월	85	464	0.718
23개월	79	470	0.738
24개월	73	476	0.758
24개월 초과		549	1.000
평균	18.822개월		

(단위 : 개)

전체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은 18.822개월이며 재취업으로 탈출할 확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개월 시점에서 재취업확률이 0.043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12개월까지 비슷한 비율을 보이다가 12개월 시점에 다시 0.043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후 재취업확률은 점차 하락하여 21개월이 지나면 0.020이하로 감소하게 된다. [표 27]의 누적 재취업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1-누적생존함수’와 같다.

[그림 4] 누적 재취업확률 : 전체



#### 4.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 실업급여 수급여부

[표 28]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이다.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성별 효과에 따른 성 분석과 함께 수행해야할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표 28]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은 16.081개월이며, 수급자의 평균 재취업기간은 19.196개월로 나타나 비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탐색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업급여가 구직노력을 저해하여 근로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을 길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소요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탐색의 시간을 보장해줌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후 성별 분

석 및 성별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모두 고려한 분석결과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8]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 실업급여 수급여부

재취업 소요 기간	실업급여 비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기간 Spell	누적 재취업	누적 재취업확률	재취업기간 Spell	누적 재취업	누적 재취업확률
0개월	0	129	0.000	721	5	0.007
1개월	122	7	0.054	705	21	0.029
2개월	115	14	0.109	675	51	0.070
3개월	111	18	0.140	645	81	0.112
4개월	107	22	0.171	615	111	0.153
5개월	103	26	0.202	582	144	0.198
6개월	101	28	0.217	552	174	0.240
7개월	97	29	0.225	492	199	0.276
8개월	89	35	0.274	453	216	0.303
9개월	81	40	0.316	413	236	0.335
10개월	75	43	0.342	378	258	0.371
11개월	64	49	0.399	344	273	0.398
12개월	49	53	0.444	311	297	0.441
13개월	38	59	0.520	271	313	0.472
14개월	31	62	0.562	236	330	0.507
15개월	31	62	0.562	199	345	0.542
16개월	31	62	0.562	168	355	0.568
17개월	15	65	0.635	132	361	0.587
18개월	12	66	0.663	102	369	0.617
19개월	8	70	0.776	95	376	0.643
20개월	7	71	0.804	87	384	0.673
21개월	6	72	0.832	82	389	0.692
22개월	6	72	0.832	79	392	0.703
23개월	6	72	0.832	73	398	0.726
24개월	6	72	0.832	67	404	0.748
24개월 초과		78	1.000		471	1.000
평균		16.081개월		19.196개월		

(단위 : 개)

[표 29] 표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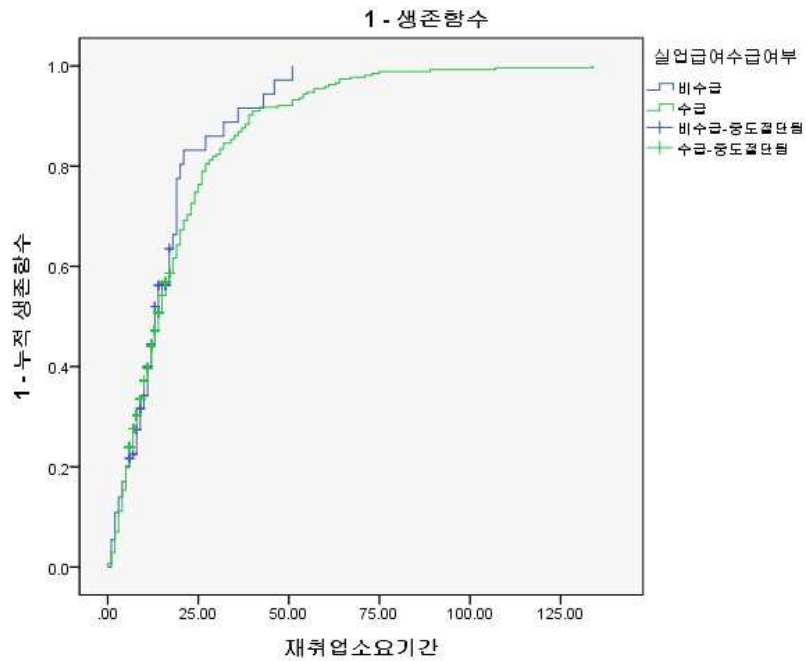
실업급여 수급여부	전체 표본	재취업 발생	중도 절단	
			중도 절단	비율

비수급	129	78	51	39.5%
수급	726	471	255	35.1%
전체	855	549	306	35.8%

(단위 : 개)

실업급여 비수급자와 수급자의 재취업확률의 추이를 보면, 비수급자의 경우 1개월 및 2개월 시점에서 0.054, 0.055의 높은 확률을 보이다가 13개월 시점의 0.078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한다. 이후에도 증감을 반복하다 19개월이 되면 0.107로 재취업확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와 조금 다르게 5개월 시점에 0.04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2개월에 0.043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하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누적 재취업확률 : 실업급여 수급여부



5.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 성별

[표 30]은 성별에 따른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ер 분석결과이다. 기초통계에서도 성별에 따른 재취업소요기간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재취업확률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남성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은 15.953개월이나, 여성은 평균 22.106개월로서 여성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에 비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 성별

재취업 소요 기간	남성			여성		
	재취업기간 Spell	누적 재취업	누적 재취업확률	재취업기간 Spell	누적 재취업	누적 재취업확률
0개월	434	4	0.009	416	1	0.002
1개월	418	20	0.046	409	8	0.019
2개월	391	47	0.107	399	18	0.043
3개월	369	69	0.158	387	30	0.072
4개월	355	83	0.189	367	50	0.120
5개월	339	99	0.226	346	71	0.170
6개월	318	120	0.274	335	82	0.197
7개월	289	134	0.308	300	94	0.228
8개월	261	150	0.348	281	101	0.246
9개월	239	165	0.386	255	111	0.275
10개월	210	186	0.442	243	115	0.287
11개월	186	200	0.481	222	122	0.308
12개월	158	218	0.534	202	132	0.341
13개월	134	233	0.581	175	139	0.366
14개월	114	241	0.608	153	151	0.412
15개월	96	250	0.642	131	157	0.438
16개월	82	256	0.666	110	161	0.458
17개월	66	260	0.685	81	166	0.489
18개월	54	265	0.712	60	170	0.521
19개월	46	273	0.755	57	173	0.545
20개월	44	275	0.765	50	180	0.601
21개월	41	278	0.781	47	183	0.625
22개월	39	280	0.792	46	184	0.633
23개월	36	283	0.808	43	187	0.657
24개월	33	286	0.824	40	190	0.681
24개월 초과		319	1.000		230	1.000
평균		15.953개월			22.106개월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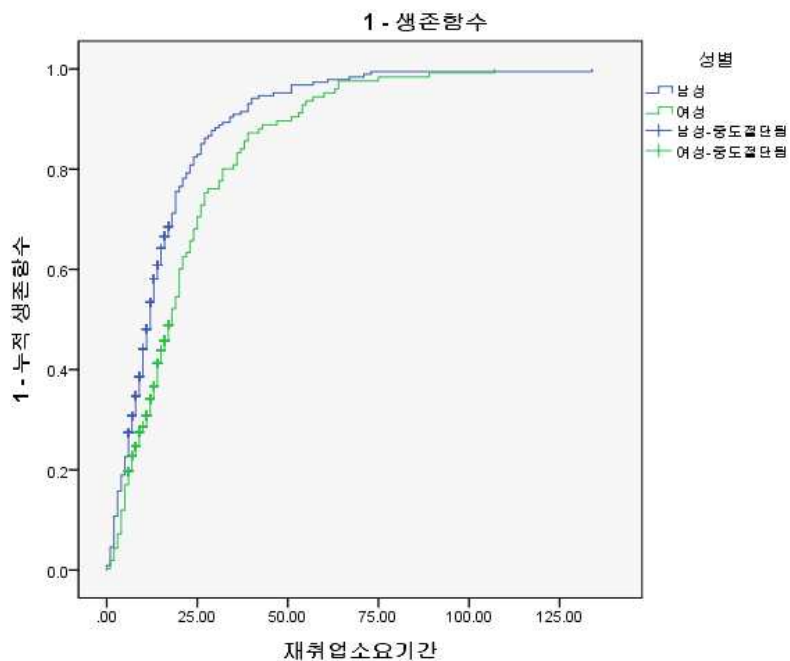
[표 31] 표본 요약

성별	전체 표본	재취업 발생	중도 절단	
			중도 절단	비율
남성	438	319	119	27.2%
여성	417	230	187	44.8%
전체	855	549	306	35.8%

(단위 : 개)

남성의 재취업확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개월 시점에서 0.061, 10개월 시점에서 0.056, 12개월 시점에서 0.053으로 높은 재취업확률을 보이며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여성과 달리 19개월에도 0.043의 수준을 보이는 등 꾸준히 재취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은 4개월, 5개월 시점이 되어서야 0.048, 0.050의 수준을 보이고, 20개월 시점에 0.05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누적 재취업확률 : 성별



재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을 재취업소요기간의 경과에 따라 누적적



으로 나타낸 [그림 6]의 결과에 의하면 전 조사시점에서 여성의 재취업확률이 남성의 재취업확률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24개월의 재취업소요기간 이후에도 남성은 17.6%, 여성은 31.9%가 계속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한번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장기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6.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ер 분석결과 :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성별

[표 32]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 성별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재취업 소요 기간	남성						여성					
	비수급자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Spell	누적 재취 업	누적 재취업 확률	Spell	누적 재취 업	누적 재취업 확률	Spell	누적 재취 업	누적 재취업 확률	Spell	누적 재취 업	누적 재취업 확률
0개월	69	0	0.000	365	4	0.011	60	0	0.000	356	1	0.003
1개월	64	5	0.072	354	15	0.041	58	2	0.033	351	6	0.017
2개월	59	10	0.145	332	37	0.100	56	4	0.067	343	14	0.039
3개월	56	13	0.188	313	56	0.152	55	5	0.083	332	25	0.070
4개월	56	13	0.188	299	70	0.190	51	9	0.150	316	41	0.115
5개월	54	15	0.217	285	84	0.228	49	11	0.183	297	60	0.168
6개월	52	17	0.246	266	103	0.279	49	11	0.183	286	71	0.199
7개월	49	18	0.261	240	116	0.316	49	11	0.183	252	83	0.235
8개월	46	19	0.277	215	131	0.361	43	16	0.268	238	85	0.242
9개월	42	22	0.325	197	143	0.397	39	18	0.304	216	93	0.269
10개월	39	23	0.342	171	163	0.461	36	20	0.341	207	95	0.276
11개월	34	26	0.396	152	174	0.497	30	23	0.401	192	99	0.291
12개월	26	28	0.439	132	190	0.551	23	25	0.449	179	107	0.321
13개월	20	33	0.551	114	200	0.588	18	26	0.478	157	113	0.346
14개월	16	35	0.601	98	206	0.611	15	27	0.510	138	124	0.394
15개월	16	35	0.601	80	215	0.651	15	27	0.510	119	130	0.423
16개월	16	35	0.601	67	221	0.679	15	27	0.510	101	134	0.445
17개월	9	37	0.673	57	223	0.690	6	28	0.580	75	138	0.473
18개월	6	38	0.720	48	227	0.714	6	28	0.580	54	142	0.510
19개월	2	42	0.907	44	231	0.738	6	28	0.580	51	145	0.537
20개월	2	42	0.907	42	233	0.750	5	29	0.650	45	151	0.591

21개월	2	42	0.907	39	236	0.768	4	30	0.720	43	153	0.610
22개월	2	42	0.907	37	238	0.780	4	30	0.720	42	154	0.619
23개월	2	42	0.907	34	241	0.797	4	30	0.720	39	157	0.646
24개월	2	42	0.907	31	244	0.815	4	30	0.720	36	160	0.673
24개월 초과		44	1.000		275	1.000		34	1.000		196	1.000
평균 1	13.787개월			16.142개월			19.412개월			22.574개월		
평균 2	15.953개월						22.106개월					

(단위 : 개)

[표 33] 표본 요약

성별		전체 표본	재취업 발생	중도 절단	
				중도 절단	비율
남성	비수급	69	44	25	36.2%
	수급	369	275	94	25.5%
	전체	438	319	119	27.2%
여성	비수급	60	34	26	43.4%
	수급	357	196	161	45.1%
	전체	417	230	187	44.8%
전체		855	549	306	35.8%

(단위 : 개)

[표 34]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

: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성별

재취업 소요 기간	실업급여 비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Spell	누적 재취 업	누적 재취업 확률	Spell	누적 재취 업	누적 재취업 확률	Spell	누적 재취 업	누적 재취업 확률	Spell	누적 재취 업	누적 재취업 확률
0개월	69	0	0.000	60	0	0.000	365	4	0.011	356	1	0.003
1개월	64	5	0.072	58	2	0.033	354	15	0.041	351	6	0.017
2개월	59	10	0.145	56	4	0.067	332	37	0.100	343	14	0.039
3개월	56	13	0.188	55	5	0.083	313	56	0.152	332	25	0.070
4개월	56	13	0.188	51	9	0.150	299	70	0.190	316	41	0.115
5개월	54	15	0.217	49	11	0.183	285	84	0.228	297	60	0.168
6개월	52	17	0.246	49	11	0.183	266	103	0.279	286	71	0.199
7개월	49	18	0.261	49	11	0.183	240	116	0.316	252	83	0.235
8개월	46	19	0.277	43	16	0.268	215	131	0.361	238	85	0.242
9개월	42	22	0.325	39	18	0.304	197	143	0.397	216	93	0.269
10개월	39	23	0.342	36	20	0.341	171	163	0.461	207	95	0.276

11개월	34	26	0.396	30	23	0.401	152	174	0.497	192	99	0.291
12개월	26	28	0.439	23	25	0.449	132	190	0.551	179	107	0.321
13개월	20	33	0.551	18	26	0.478	114	200	0.588	157	113	0.346
14개월	16	35	0.601	15	27	0.510	98	206	0.611	138	124	0.394
15개월	16	35	0.601	15	27	0.510	80	215	0.651	119	130	0.423
16개월	16	35	0.601	15	27	0.510	67	221	0.679	101	134	0.445
17개월	9	37	0.673	6	28	0.580	57	223	0.690	75	138	0.473
18개월	6	38	0.720	6	28	0.580	48	227	0.714	54	142	0.510
19개월	2	42	0.907	6	28	0.580	44	231	0.738	51	145	0.537
20개월	2	42	0.907	5	29	0.650	42	233	0.750	45	151	0.591
21개월	2	42	0.907	4	30	0.720	39	236	0.768	43	153	0.610
22개월	2	42	0.907	4	30	0.720	37	238	0.780	42	154	0.619
23개월	2	42	0.907	4	30	0.720	34	241	0.797	39	157	0.646
24개월	2	42	0.907	4	30	0.720	31	244	0.815	36	160	0.673
24개월 초과		44	1.000		34	1.000		275	1.000		196	1.000
평균 1	13.787개월			16.142개월			19.412개월			22.574개월		
평균 2	16.081개월						19.196개월					

(단위 : 개)

[표 35] 표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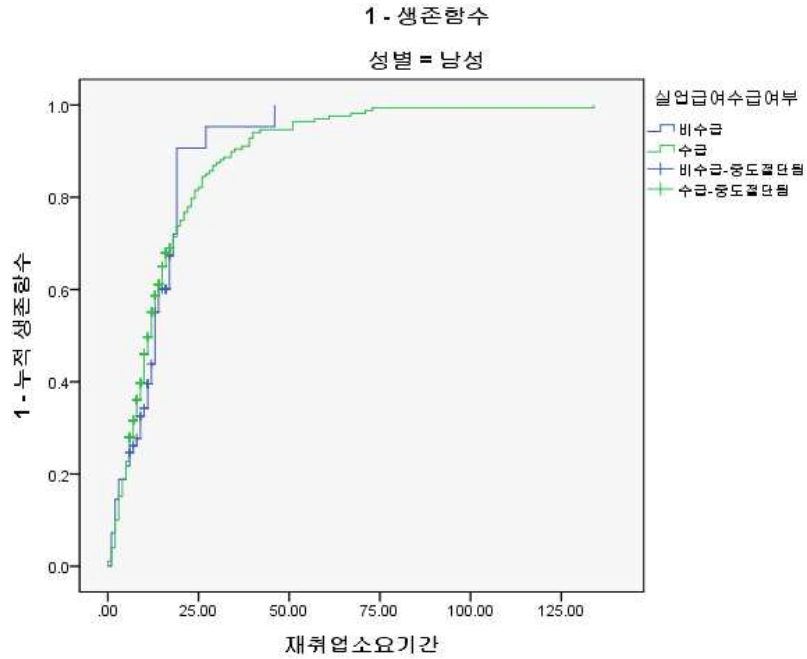
실업급여 수급여부		전체 표본	재취업 발생	중도 절단	
				중도 절단	비율
비수급	남성	69	44	25	36.2%
	여성	60	34	26	43.3%
	전체	129	78	51	39.5%
수급	남성	369	275	94	25.5%
	여성	357	196	161	45.1%
	전체	726	471	255	35.1%
전체		855	549	306	35.8%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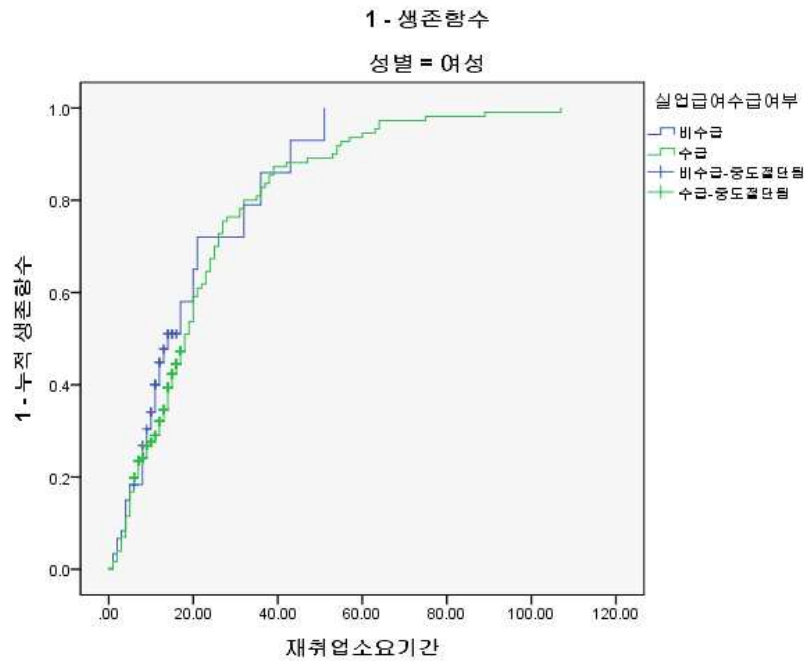
[표 32]와 [표 34]는 성별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모두 고려한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이다. [표 32]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의 차이가 2.355개월로서 여성의 3.162개월에 비해 짧게 나타나고, 여성에 비해 수급자 및 비수급자 모두 재취업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적 재취업확률을 살펴보더라도 24개월까지 재취업으로 이행한

확률이 여성에 비해 수급자 및 비수급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7] 누적 재취업확률 : 남성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림 8] 누적 재취업확률 : 여성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또한 [표 34]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며,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24개월 이내에 재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5]에 의하면 비수급자 집단과 수급자 집단 모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표 28]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보다 길게 나타난 것은 여성 비수급자의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장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대체로 실업급여는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는 앞서 [표 28]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실업급여 비수급자에 비해서 길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단기간의 취업과 실업을 되풀이하는 반복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실직 시 빠르게 재취업을 하지만 수급자에 비해 다시 실직할 가능성도 높으며, 실업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업급여제도의 효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기타 구직활동 지원정책이 실업급여와 결부되어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가 실업상태의 근로자가 더 좋은 직장이나 새로운 직업으로 이직하고 싶을 때 직업탐색을 위한 보호 장치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재취업소요기간을 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해 길어진 원인을 개인의 의중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동기 감소로 일반화하기보다 개별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 달라

진 것일 수도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소득 근로자는 자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탐색을 위해 재취업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유지의 필요로 인해 재취업소요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수급자의 상당수는 자발적 이직자로서 전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설령 비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이 어려운 집단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실업자들의 기간 경과에 따른 탈출확률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표 28]에서 보았듯이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탈출확률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비수급자의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은 이직 직후에 높지만, 수급자의 실직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은 이직 직후에는 낮고 5개월이 되어서야 높은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소요기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3절 연구 II-2 :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을 통한 재취업효과

앞서 재취업소요기간에 대한 기초통계를 통해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본 절에서는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sup>44)</sup> 우선 전체 표본에 대상으로 영향요인과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 후, 남성과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각각 분석대상으로 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모형인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sup>45)</sup>

---

44) 분석을 위해 활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22이다.

실업탈출모형 분석(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 :

$$h(t) = h_0(t) \exp(\beta X)$$

(단,  $X$  :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부양자녀 유무, 가구근로소득, 실업급여 수급여부, 이전직장 고용형태)

1.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결과 : 전체

[표 36]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 전체

	추정계수 ( $\beta$ )	표준오차	유의확률 (p-value)	Exp( $\beta$ )	Exp( $\beta$ )에 대한 95% CI	
					하한	상한
성별	-0.237	0.129	0.065	0.789	0.613	1.015
연령	-0.116	0.056	0.040*	0.891	0.797	0.995
교육수준	-0.034	0.053	0.526	0.967	0.871	1.073
혼인상태	-0.038	0.118	0.748	0.963	0.763	1.214
가구주 여부	0.576	0.136	0.000***	1.779	1.363	2.321
부양자녀 유무	0.115	0.098	0.243	1.122	0.925	1.360
가구근로소득	0.000	0.000	0.391	1.000	1.000	1.001
실업급여 수급여부	-0.173	0.130	0.184	0.841	0.651	1.086
이전직장 고용형태	-0.024	0.094	0.798	0.976	0.812	1.174
모형 적합도(-2로그 우도) 5530.322						
N = 726(event : 496, censored : 230)						

주 : \*p<0.05 \*\*p<0.01 \*\*\*p<0.001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표 36]에 의하면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45)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은 재취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중도 절단된(Censored) 관측 값들이 각 구간의 중간시점에서 중도 절단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 분석은 재취업이라는 사건의 발생과 중도 절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하는 카플란-메이어(Kaplan-Meier) 분석 방법보다 다소 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나, 본 연구처럼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미치는 요인은 ‘연령’ 과 ‘가구주 여부’ 이며, 다른 설명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연령의 경우 재취업확률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15~29세 집단에 비해 연령 집단이 증가할수록 재취업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는 전체 표본에서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및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 각각에서도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가구주일수록 재취업확률에 정(+)의 효과가 나타난다.

Odds ratio(=Exp( $\beta$ ))를 통해 재취업소요기간에 대한 각 요인의 한계효과를 측정해보면, 연령의 Odds ratio는 0.891로 나타나 연령집단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Odds가 10.9%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취업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가구주 여부의 경우 Odds ratio는 1.779로 나타나 가구주인 경우 재취업으로 이행할 Odds가 77.9% 증가한다. 이는 가구주가 아닌 경우보다 가구주인 경우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가구주가 가진 가구의 생계에 대한 책임감과 같은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고, 가구주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성별의 영향은 여성일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추정된 계수 값이 유의확률에 의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별이 재취업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1998년의 IMF 경제위기 및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조건 하에



서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모든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의 영향은 이하의 [표 39]에서 나타난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 별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결과 : 성별

[표 37]과 [표 38]은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 ‘가구주 여부’, ‘부양자녀 유무’가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에는 ‘가구주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 남성

	추정계수 ( $\beta$ )	표준오차	유의확률 (p-value)	Exp( $\beta$ )	Exp( $\beta$ )에 대한 95% CI	
					하한	상한
연령	-0.213	0.070	0.002**	0.808	0.705	0.927
교육수준	-0.010	0.068	0.879	0.990	0.867	1.130
혼인상태	0.124	0.157	0.431	1.132	0.832	1.540
가구주 여부	0.724	0.243	0.003**	2.064	1.281	3.324
부양자녀 유무	0.283	0.131	0.031*	1.327	1.026	1.715
가구근로소득	0.001	0.000	0.055	1.001	1.000	1.002
실업급여 수급여부	-0.083	0.178	0.642	0.921	0.649	1.305
이전직장 고용형태	-0.044	0.131	0.736	0.957	0.739	1.238
모형적합도(-2로그 우도) 2775.133						
N = 359(event : 283, censored : 76)						

주 : \*p<0.05 \*\*p<0.01 \*\*\*p<0.001

구체적으로, 남성은 연령 집단이 증가할수록 Odds가 19.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구주 여부의 경우 Odds ratio가 2.064

로 나타나 가구주일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Odds가 106.4%로 크게 증가하여 가구주의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부양자녀 유무도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Odds ratio가 1.327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재취업으로 이행할 Odds가 32.7%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연령은 재취업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가구주 여부와 부양자녀 유무는 재취업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8]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 여성

	추정계수 ( $\beta$ )	표준오차	유의확률 (p-value)	Exp( $\beta$ )	Exp( $\beta$ )에 대한 95% CI	
					하한	상한
연령	0.025	0.098	0.797	1.026	0.846	1.243
교육수준	-0.089	0.094	0.345	0.915	0.760	1.101
혼인상태	-0.295	0.184	0.110	0.744	0.519	1.069
가구주 여부	0.548	0.179	0.002**	1.730	1.281	2.457
부양자녀 유무	-0.097	0.156	0.534	0.908	0.668	1.232
가구근로소득	0.000	0.001	0.690	1.000	0.999	1.001
실업급여 수급여부	-0.240	0.196	0.222	0.787	0.536	1.156
이전직장 고용형태	0.053	0.140	0.704	1.055	0.801	1.388
모형적합도(-2로그 우도) 2067.441						
N = 367(event : 213, censored : 154)						

주 : \*p<0.05 \*\*p<0.01 \*\*\*p<0.001

여성의 경우에도 가구주일수록 재취업확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Odds ratio가 1.73으로서 가구일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Odds가 73%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한 경우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가구주 여부를 제외하고는 설명변수들이 재취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재취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구주 여부가 존재하며, 두 집단 모두 가구주일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가구주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 3.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결과 : 실업급여 수급자

[표 39]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 실업급여 수급자

	추정계수 ( $\beta$ )	표준오차	유의확률 (p-value)	Exp( $\beta$ )	Exp( $\beta$ )에 대한 95% CI	
					하한	상한
성별	-0.302	0.142	0.034*	0.739	0.559	0.977
연령	-0.097	0.062	0.118	0.907	0.803	1.025
교육수준	-0.027	0.057	0.635	0.973	0.870	1.089
혼인상태	-0.045	0.127	0.720	0.956	0.746	1.225
가구주 여부	0.486	0.149	0.001**	1.626	1.215	2.177
부양자녀 유무	0.137	0.108	0.205	1.147	0.928	1.417
가구근로소득	0.000	0.000	0.309	1.000	1.000	1.001
이전직장 고용형태	0.007	0.102	0.942	1.008	0.825	1.230
모형적합도(-2로그 우도) 4603.532						
N = 619(event : 425, censored : 194)						

주 : \*p<0.05 \*\*p<0.01 \*\*\*p<0.001

앞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성별 변수의 영향은 여성일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추정된 계수 값이 유의확률에 의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이러한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성별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과 ‘가구주 여부’ 로 나타난다.

성별의 경우 Odds ratio가 0.739로서 여성일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Odds가 26.1%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여성이 남성보다 재취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재취업확률이

낮다는 강철희·김교성·김진욱(1999), 김종숙(2005), 김철희(2004), 유길상(2003), 윤정향·이시균(2010)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가구주 여부는 Odds ratio가 1.626로 나타나 가구주일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Odds가 62.6% 증가하며, 이전의 분석에서와 같이 가구주인 경우에 재취업확률에 정(+)의 효과를 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제7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가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재취업효과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실증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보험제도의 외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제도의 적용 및 수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피보험자 중 여성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남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취득자를 포함한 피보험자 대비 취득자의 비중과 상실자를 포함한 피보험자 대비 상실자의 비중 모두 여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여성들이 안정적인 피보험자 신분을 갖는다고 단언하기 힘들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여성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피보험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보다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오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실업급여제도의 수급현황에서는 노동경력을 지속하기 어렵고 고용지

위가 불안정한 여성근로자의 현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수혜 인원, 수혜진수, 수혜금액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현실은 실업급여에 그대로 반영되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업급여 급여수준이 낮고 여성 수급자 대부분이 낮은 금액 구간에 몰려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통한 실직 여성들의 생계유지 및 구직 활동은 실직 남성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내적 효과성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재취업소요기간의 평균은 12.7614개월로 나타났고,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평균 11.3488개월, 수급자는 평균 13.0124개월로 나타나 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재취업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여성은 13.6691개월, 남성은 11.8973개월로서 여성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으며, 비수급자와 수급자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재취업소요기간이 길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은 18.822개월이며 2개월 시점에 재취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0.043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은 16.081개월이며, 수급자의 평균 재취업기간은 19.196개월로 나타나 비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비수급자의 경우 1개월, 2개월 시점에서 높은 재취업확률을 보이고,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와 달리 5개월 시점에 높은 확률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재취업확률의 카플란-메이어 분석결과에서 남성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은 15.953개월이나, 여성은 평균 22.106개월로 나타나 여성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에 비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취업확률의 수준이 남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24개월의 재취업소요기간 이후에 남성은 17.6%, 여성은 31.9%가 계

속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한번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내적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가구주 여부로 나타났으며, 다른 설명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재취업확률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는 전체 표본에서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및 수급자 집단 각각에서도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즉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고, 가구주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는 연령, 가구주 여부, 부양자녀 유무가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여성은 가구주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즉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남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일수록, 부양자녀가 있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가구주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재취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주 여부 밖에 없었으며, 연령과 부양자녀 유무는 남성의 경우에만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성별의 영향은 여성일수록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추정된 계수 값이 유의확률에 의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측정되어 이러한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을 대상

으로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시 분석함으로써 성별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수급자 집단 내에서 성별의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외적 효과성 분석과 내적 효과성 분석을 종합하면,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는 보다 많은 여성근로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왔으나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여성근로자의 실업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으며, 여성근로자들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에 비해 길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카플란-메이어 분석에서 여성이 기간 내에 재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이 남성보다 높은 점, 여성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에 비해 길다는 점, 그리고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에서 여성일수록 재취업으로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1.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및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가 여성과 남성의 재취업효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성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용보험제도는 보다 많은 여성근로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한 지위와 노동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업급여의 수혜인원, 수혜건수, 수혜금액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성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플란-메이어 분석을 통해 여성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보

다 길고, 여성의 재취업확률이 남성에 비해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을 통해서도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노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제도의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 내 여성의 지위와 재취업효과의 성별차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여성에게 차별적인 재취업효과의 문제를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아,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의 재취업효과에 있어서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가 다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양한 외적·내적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재확인하였고, 비록 연구의 수준은 부족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취업효과를 평가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을 통해 강철희·김교성·김진욱(1999), 김종숙(2005), 김철희(2004), 유길상(2003), 윤정향·이시균(2010)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재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표본, 성별 및 실업급여 수급자를 막론하고 가구주 여부가 재취업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과 달리 남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부양자녀 유무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향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sup>46)</sup> 첫째,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및 수급률을 지

---

46) 이하의 정책적 제언은 김종숙(2005, pp.117-119)과 김은하 외(2010, pp. 260-261)



금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과 열악한 일자리에서 근로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되는 집단의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여성근로자에게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여성근로자는 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임금 수준도 낮기 때문에 실직 시에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이 실직 시에 실업급여의 보호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가입률과 수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들의 실업사유에 대해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보험통계연보는 실업의 사유를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남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는 항목들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일례로 고용보험통계연보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성 차별 등으로 인해 실업을 경험한 여성들의 정보는 알 수가 없다. 고용보험 제도가 남성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가 겪는 차별적인 경험이 통계적으로 반영되어 공식적인 정보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앞서 실업급여제도가 실업상태인 남성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남성들이 보다 많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제도가 성 평등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여성근로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여받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배려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사나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거나 노동시장을 떠나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는 여성의 실업사유가 출산이나 육아, 돌봄 노동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및 박영란 외(2001, pp.167-169)를 참고함.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 단절 여성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도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sup>47)</sup>

넷째, 외적 효과성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급여 금액의 산정이 임금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성별 임금격차가 반영되어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하지만 실업급여의 목적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인 점을 고려할 때, 수급액의 수준이 임금에 비례하는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급여액의 최저수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차등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상태의 여성근로자가 남성에 비해 재취업이 힘든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여성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남성과 달리 실망실업자가 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불리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상으로 실업 여성들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소요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sup>48)</sup> 만일 이 결과가 직업탐색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업급여가 구직노력을 저해하여 재취업을 지연시킴으로써 재취업 소요기간을 길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러한 실업급여의 부수적인 효과를 억제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강화와 조

---

47) 물론, 여성근로자가 출산이나 양육 등의 상황으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으로 실직한 여성이 기존의 구직급여사업을 통해 급여를 제공받는 것과 여성근로자를 배려한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급여를 제공받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재원 증가의 필요성 없이 제도가 여성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별에 따른 근로자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란 외(2009, p. 146) 참고].

48)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난 결과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집단 간 비교 외에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재취업수당을 통한 재취업효과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성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적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노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제도의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 내 여성의 지위와 재취업효과의 성별차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 내 여성현황과 여성들의 지위를 파악함에 있어 구체적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에 제약이 있고,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 수준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제도와 관련된 성별 분리통계가 없거나, 관련 기초자료와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의 분석은 탐색적 차원에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과 수급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에 대한 성 분석과 이해는 정책형성과정의 모든 단계와 정책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고용보험제도의 재정과 전달체계 등은 포함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과 수급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많은 표본이 의도하지 않게 배제되어 노동시장의 전반적 구조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의 경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8000개가 넘는 표본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전제로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으로 이행한 표본을 추출, 만 65세 이상의 경우 법적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이기에 삭제, 회고적

일자리, 비임금 일자리 등을 삭제하고 분석함에 따라 표본의 수가 줄어든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체 표본수는 855개이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경우 각각 438개, 417개로 분석대상이 줄어들어 따라 실업급여 수급 및 비수급 집단을 성별로 비교할 때 분석의 대상이 적어지게 되는 아쉬움도 있었다.<sup>49)</sup>

넷째,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에서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다양한 변수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카플란-메이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여성근로자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에 비하여 길고 실업상태에 잔류할 확률이 높았으며, 수급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취업으로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가 여성근로자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깊이 있게 밝혀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여성의 낮은 재취업확률은 실업급여제도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남녀 간 이질성 및 여성의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인 여성의 특성과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지위가 실업급여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인구학적, 경제적, 일자리 특성만으로 살펴볼 수 없는 직업훈련 여부, 조세제도를 통한 급여, 민간보험 급여, 기타 사회보험 수급 여부 등 연관 요인들이 실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 이행과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질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정

---

49)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경우 현재 15차(2012년도)조사 자료까지만 공개되어 있어 분석 자료가 부족한 것도 표본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후 16차 및 17차 조사 자료가 공개된다면 보다 많은 표본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어 실업급여제도의 재취업효과에 대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교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고용보험제도가 여성을 비롯한 실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철희·김교성·김진욱(1999) :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 모수적 생존모델을 이용한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37, 4, 1-31.
- 강철희·김교성(1999) :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 형태에 관한 연구 : Weibull Survival Model과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39, 4, 5-40.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 호.
- 고용노동부(2015) : 『고용보험백서』
- 권영자(1995) :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평등, 참여, 복지를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혁주(2011) : “수요자 중심 시각에서 본 고용보험 서비스 :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 제 542회 「정책&지식」 온라인 포럼, 한국정책지식센터.
- 금재호·조준모(1998) : “이직(Job separation)의 원인과 행태에 관한 연구 : 기업규모별 분석” , 『노동경제논집』 21, 2, 163-194.
- 김교성(2005) :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 생존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7, 2, 253-275.
- 김두순(2007) : “실업급여 수급 증가원인 분석” , 『고용이슈』 10, 한국고용정보원.
- 김민경(2003) : “정규·비정규직으로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복순(2009) : “이슈분석 : 실업급여 지원 현황 및 증가 원인” , 『노동리뷰』 3, 43-55
- 김선욱(1995) :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 『여성과 사회』 6.
- 김영옥·마경희·이은아(2008) :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우영(1999) : 『실업자의 노동시장 이행분석과 실업대책』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은하·김혜란·배은경·홍찬숙(2010) : “실업급여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제도규칙과 가입현황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 4, 239-264,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종숙·박수미(2003) : 『여성의 노동이동』,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숙·문유경·김영옥·강민정(2004) : 『고용보험제도 시행 10년과 여성근로자 :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실태와 효과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숙(2005) : “고용보험과 여성근로자 : 가입현황과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경제학회 발행정보 정기학술대회』 7, 1-16.
- \_\_\_\_\_ (2005) :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과 재취업효과”, 『여성연구』 68, 107-135.
- 김철희(2004) : “빈곤층의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20, 1, 173-204.
- 김혜란·김은하·배은경·홍찬숙(2009) :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3) : 실업급여제도 예산의 젠더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연구보고서.
- 김혜원(2009) : “실업급여의 활성화”, 이병희·김혜원·황덕순·김동헌·김영미·김우영·최옥금,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남춘호(2002) :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개편과 장기실업 및 반복실업”, 『산업노동연구』 8, 2, 71-110.
- 류기철(1999) : “실업급여 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경제학연구』 47, 1, 71-97.
- 문진영(1998) : “긴급제안, IMF시대-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저소득 계층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정책공청회.
- 박수미·이택면·김승연·우원규·강석훈(2008) : 『2008년 한국여성

- 가족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및 제1차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영란·황정임·김진경(2001) :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재빈(2006) : 『생존분석 : 이론과 실제』, 신광.
- 박진희(2009) : “성별 일자리 탐색방법과 취업성과”, 한국고용정보원.
- 방하남·하윤숙(2000) :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재취업경로분석”, 『사회보장연구』 16, 1, 한국사회보장학회.
- 방하남(1998) : “한국 실업구조의 특징과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자료집』, 5-36.
- \_\_\_\_\_ (2010)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자료집』, 155-177.
- 보건복지부(1999) : 『보건복지백서』.
- \_\_\_\_\_ (2000) : 『보건복지통계연감』.
- 엄규숙(2003) : “유럽복지체제의 젠더효과분석에 기초한 친 여성적 한국공적연금제도의 조건”, 『유럽연구』 18.
- 엄현택·이창원(2010) : “실업급여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수급기간과 지급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 1.
- 엄현택(2008)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우리나라 고용보험DB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2008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우명숙(2006)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여성노동 :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37, 29-53.
- 원숙연(2003) : “젠더와 국가정책의 역학 : 젠더-정책레짐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행정학보』 37, 2, 227-241.
- 유길상·김복순·성재민(2003) :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행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 유길상·성재민(2005) : “한국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 200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유길상(2003) :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 정책수혜대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보』 12, 4, 175-199.
- \_\_\_\_\_ (2004) :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 , 『한국경제연구』 12, 6, 89-111.
- \_\_\_\_\_ (2005) : “고용보험 10년 평가와 과제” , 『노동리뷰』 7, 3-15.
- \_\_\_\_\_ (2007) :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특성” , 『사회보장연구』 23, 3, 1-24.
- \_\_\_\_\_ (2012) :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전방안” , 『노동정책연구』 12, 2, 131-164.
- 유태균·김진욱(1998) :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탈피에 관한 실증 연구” , 『연세사회복지연구』 5, 155-180.
- 유해미(2004) : “복지국가의 다양성에 대한 종합적 젠더 분석틀의 모색” , 『사회와 이론』 5, 183-216.
- 윤윤규·박성재(2008) : 『비자발적 이직자의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윤정향·이시균(2008) : “실업급여가 재고용에 끼치는 정책적 효과 : 고용보험 DB분석” , 『고용이슈』 1, 3, 43-55.
- \_\_\_\_\_ (2010) : “실업급여가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 『사회보장연구』 26, 2, 145-171,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병훈·윤정향(2001) :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 『산업노동연구』 7, 2, 1-33.
- 이병희(2000) : “반복실업과 실업의 장기화” , 『노동경제논집』 23, 1, 1-25.
- \_\_\_\_\_ (2009) :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고용보험” , 『고용안전망과 활성화전략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9) :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평가』 , KDI 연구보고서.
- 이서윤(2014) : “취업, 임금, 재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본 한국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성 분석” ,

- 『한국사회정책』 21, 3, 159-187.
- 이시균·박진희·양수경(2008) :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현황분석 및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2008-2호.
- 이시균·이주현(2008) : “고용안정성에 관한 특성 분석”, 『고용이슈』 1, 3, 112-127.
- 이영자(2004)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자성의 변화”, 『한국여성학』 20, 3, 99-138.
- 이주현·김두순(2008) : “실업급여 반복수급 규모와 수급경향 분석”, 『고용이슈』 1, 2, 156-171.
- 이주호(1992) :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15.
- 이혜경(1999) : “보건복지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교재』, 보건복지부·한국여성개발원.
- 장지연·은수미(2010) :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노동부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호정화(2001) :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 미취업기간 탈출률의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 4, 159-188.
- 장지연(2010)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화”, 비판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 \_\_\_\_\_ (2010)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이동성』, 2010년 비판사회학대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
- 정의룡(2015) :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 근로연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 1, 103-128.
- 조흥식·김진구(2000) :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 1997~1998”, 『사회복지연구』 14, 한국사회복지학회.

- 최낙혁·권혁주(2010) : “기간제 노동자의 지위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 2, 165-184.
- 최화정(1998) : “남녀별 노동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 : 경기침체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_\_\_\_\_ :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_\_\_\_\_(2002) : 『사회조사』  
 \_\_\_\_\_(2005) : 『사회조사』  
 \_\_\_\_\_(2014) : 『생활시간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각 년도.  
 \_\_\_\_\_(2008) :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1부-심층평가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_\_\_\_\_(2014) : 『제15차(201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 활동-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1999) : 『실업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보고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 『현행 실업대책 평가 및 개선방안』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0) : 『여성통계연보』  
 \_\_\_\_\_(2008) : 『여성가족패널조사』 .
- 한혜경(2000) : “IMF 이후 빈곤 및 실업대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6, 215-234.
- 홍민기(2008)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사업심층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홍성우·양채열(1999) :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 『노동경제논집』 22, 1, 1-29.
- 홍찬숙·김은하·김혜란·배은경(2010) : “실업급여제도의 성별영향 : 실무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 3, 31-63.
- 황덕순·전병유·고선(2004) : “고용보험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이동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황덕순(2000) : “실업급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 방향』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 황수경 · 윤윤규 · 조성재 · 전병유 · 박경로 · 안주엽(2010) : 『경제위기와 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03) :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 한국노동연구원.
- Acemoglu, D. and Shimer, R.(1999) : “Efficient Unemployment Insurance” ,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7**, 5, 893-928.
- Acemoglu, D.(2001) : “Good Jobs versus Bad Jobs : Theory and some evidence” ,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 1-21.
- Addison, J. and P. Portugal(1984) : “Advance Notice and Unemployment : New Evidence from the 1988 Displaced Worker Survey” ,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5**, 645-682.
- Anderson, P.(1992) : “Time-varying Effects of Recall Expectation, a Reemployment Bonus, and Job Counseling on Unemployment Durations” ,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99-115.
- Atkinson, A. and Micklewright, J.(1991) :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 A Critical Review” , *Journal of Economics Literature* **29**, 1679-1727.
- Bailey, M.(1974) : “Wages and Employment Under Uncertain Demand” , *Review of Economic Studies* **41**, 37-50.
- Baker, D., Glyn, A., Howell, D. R. and Schmitt, J.(2005) :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Unemployment :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Cross-Country Evidence” , Howell, D. R.(ed), 2005, *Fighting Unemployment : The Limits of Free Market Orthodoxy* , Oxford University Press.
- Bassanini, A. and R. Duval(2006) : “Employment Patterns in OECD Countries : Reassessing the Role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35, OECD.

- Belzil, C.(1995) :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over Time : An Analysis with Event History Data”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 113-126.
- \_\_\_\_\_ (2001) : “Unemployment Insurance and Subsequent Job Duration : Job Matching versus Unobserved Heterogeneity” ,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6**, 5, 619-636.
- Berotola, G. and Garibaldi, P.(2002) : “The Structure and History of Italian Unemployment” , Working Paper, Yrjo Jahansson Foundation, November.
- Budlender, D.(2000) :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Budgets in the South” , *World Development* **28**, 7, 1365-1378.
- Burdett, K.(1979) : “Unemployment Insurance Payments as a Search Subsidy : A Theoretical Analysis” , *Economic Inquiry* **17**, 333-343.
- Card, D. and Levine, P. B.(2000) : “Extended benefits and the Duration of UI Spells : Evidence from the New Jersey Extended Benefit Program”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8**, 107-138.
- Carling, K., Holmlund, B. and Vejsiu, A.(2001) : “Do Benefit Cuts Boost Job Findings? Swedish Evidence from the 1990s” , *Economic Journal* **111**, 766-790.
- Chetty, R.(2005) : “Why do Unemployment Benefits Raise Unemployment Durations? Moral Hazard vs. Liquidity” , NBER(W11760). March.
- Corak, M.(1993) : “Is Unemployment Insurance Addictive? Evidence from the Benefit Durations of Repeat Users” ,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7**, 62-71.
- Daly, M.(1994) : “Comparing Welfare States : Towards a Gender Friendly Approach” , Diane Sainsbury (ed.), *Gendering Welfare States*, Sage Publications, 101-117.

- \_\_\_\_\_ (2000) : *The Gender Division of Wel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chhorst, W., Kaufmann, O., Konle-Seidl and Reinhard, H. J.(2008) : “Bringing the Jobless into Work? An Introduction to Activation Policies” , In Eichhorst, W., Kaufmann, O., Konle-Seidl eds., *Brining the Jobless into Work ? Experiences with Activation Schemes in Europe and the US*, Springer, 1-16.
- Ehrenberg, R. G. and R. S. Smith(1988) : *Modern Labor Economics : Theory and Public Policy*, 3rd ed.
- Esping-Adersen, G.(1990) :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xford : Polity Press.
- Feldstein, M. S.(1976) : “Temporary Layoffs in the Theory of Unemployment”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837-857.
- \_\_\_\_\_ (1999) : “Reducing Poverty, Not Inequality” , *The Public Interest*, No. **137**.
- Fraser, N.(1989) : “Women, Welfare and the Politics of Need Interpretation” , Nancy Fraser, *Unruly Practice : Power, Discourse and Gender in Contemporary Social Theory*, Cambridge : Policy Press, 144-160.
- Fredriksson, P. and Holmlund, B.(2006) : “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Design : Time Limits, Monitoring or Workfare?” ,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3**, 565-585.
- Gangl, M.(2002) : “Unemployment Benefits as a Search Subsidy : New Evidence on Duration and Wage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No. FS I 02-208 :Discussion paper).
- \_\_\_\_\_ (2004) : “Welfare States and the Scar Effects of Unemployment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 1319-1364.

- Gerfin, M., Lechner, M. and Steiger, H.(2005) : “Does Subsidised Temporary Employment Get The Unemployed Back to Work? An Econometric Analysis of Two Different Schemes” , *Labour Economics* **12**, **6**, 807-835.
- Grimshaw, D. and J. Rubery(1997) : “Workforce Heterogeneity and Unemployment Benefits : the Need for Policy Re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 **4**, 291-318.
- Haber, W. and M. G. Murray(1996) :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 An Historical Review and Analysis*.
- Hamermesh, D. S.(1980) : “Unemployment insurance and Labor supply” ,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1**, 517-527.
- Hammer, T.(1999) : “The Influence of Different Compensation Levels of Unemployment Benefits on Job Chances among Unemployment Youth : A Comparative Study of the Nordic Countries” , *Acta Sociologica*, Scandinavian Sociological Association **42**, 123-134.
- Heer B. and A. Morgenstern(2005) : “The Labor Market Effects of Indexing Unemployment Benefits to Previous Earnings” , *Public Finance Review* **33**, **3**, 385-402.
- ILO(2001) : “A Conceptual framework for gender analysis and planning” ,  
[www.ilo.org/public/english/region/training/until/mainmenu.htm](http://www.ilo.org/public/english/region/training/until/mainmenu.htm).
- Jepsen, M. and Danièle Meulders(1997) : “Gender inequalities in European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0**, **4**, 43-61.
- Katz, Lawrence F. and Bruce D. Meyer.(1990) : “The impact of the potenti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 **1**, 45-72.

- Konstantinos Tatsiramoss(2006) : “Unemployment Insurance in Europe : Unemployment Duration and Subsequent Employment Stability” , IZA Discussion paper series, 2280, August.
- Latimer, M.(2003) :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ex and Race Inequalities in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0**, **4**, 95-122.
- Lewis, J.(1992) :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 ,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 **3**, 159-173.
- \_\_\_\_\_ and Ilona Ostner(1991) : “Gender and the Evaluation of European Social Policies(Paper Presented at the CES Workshop on Emergent Supranational Social Policy : The EC’s Social Dimens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 *Center for European Studies*, Havard University.
- Lippman, S. and J. McCall.(1976) : “The Economics of Job Search: A Survey” , *Economic Inquiry* **14**, 155-189.
- MacDonald, M.(1998) : “Gender & Social Security Policy : Pitfalls and Possibilities” , *Feminist Economics* **4**, **1**, 1-25.
- Marimon, R. and Zilibotti, F.(1999) : “Unemployment vs. Mismatch of Talents : Reconsidering Unemployment benefits” , *Economic Journal* **109**, 266-291.
- McHugh, R. and I. Kock(1994) : “Unemployment Insurance : Respond-ing to the Expanding Role of Women in the Work Force” , *Clearinghouse Review* April, 1422-1436.
- McKenna, C.(1985) : *Uncertainty and Labor Market : Recent Development in Job Search Theory*, Brighton, Sussex : Harvester Press.
- Meyer, Bruce D.(1990) :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spells” , *Econometrica* **58**, **4**, 757-782.
- Michal P. and D. Szelewa(2007) : “A Comparative Study of Unemploy



- ment Compens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the 5<sup>th</sup>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Security, ISSA.
- Moffit, R. and W. Nicholson(1982) : “The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on Unemployment : The Case of Federal Supplemental Benefit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4**, 1-11.
- Mortensen D.(1977) : “Unemployment Insurance and Job Search Decisions” ,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0**, 505-517.
- \_\_\_\_\_ (1986) : “Job Search and Labor Market Analysi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II , edited by Ashenfelter, O. and R. Layard, Amsterdam : North Holland.
- O’Connor, J.(2003) :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 Regimes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
- OECD(2006) :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 Paris.
- \_\_\_\_\_ (2007) :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 Paris.
- Orloff, S. A.(1993) :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03-328.
- Pascall, G.(1986) : *Social Policy : A feminist analysis*, Tavistock Publications : London and New York,.
- Pateman, C.(1989) : *The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 Polity Press.
- Pearce, D.(1990) : “Welfare is Not for Women : Why the War on Poverty Cannot Conque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 Linda Gordon(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Madison, Wisconsin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Pedersen, P. and Westergård Nielsen, N.(1993) : “Unemployment : A Review of the Evidence from Panel Data” , *OECD Economic Studies* **20**, 65-114.

- Pissarides, C.(1990) : *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  
Basil Blackwell, Oxford.
- Sainsbury, D.(1993) : “Dual Welfare and Sex Segregation of Access to Social Benefits : Income Maintenance Policies in the UK, the US, the Netherlands and Sweden” , *Journal of Social Policy* **22**, **1**, 69-98.
- \_\_\_\_\_ (1996) :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 *Gender and Welfare States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Shimer, R.(2005) : The cyclical behavior of Equilibrium unemployment and vacancies, *American Economic Review* **95**, 25-49.
- Sjöberg, O.(2000) : “Unemployment and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OECD 1960-1990-An Empirical Test of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 *Work, Employment & Society* **14**, **1**, 51-76.
- Smith, R., Rick McHugh and Andrew Stettner(2003) : “Unemployment Insurance and Voluntary Quits” , *Challenge* **46**, **3**, 89-107.
- Tatsiramoss, K.(2006) : “Unemployment Insurance in Europe : Unemployment Duration and Subsequent Employment Stability” , IZA Discussion paper series No. **2280**, August.
- Taylor Gooby, P.(1991) : “Welfare state regimes and welfare citizenship” ,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 **2**, 93-105.
- Townson, M. and Kevin Hayes(2007) : “Women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 The Gender Impact of Current Rules on Eligibility and Earnings Replacement” ,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Toronto.
- [http://www.policyalternatives.ca/documents/Natinal\\_Ofiiice\\_Pubs/2007/Women\\_and\\_the\\_EI\\_Program.pdf](http://www.policyalternatives.ca/documents/Natinal_Ofiiice_Pubs/2007/Women_and_the_EI_Program.pdf)

- Uusitalo, R. and Verho, J.(2010) : “The Effect of Unemployment Benefits on Reemployment Rates : Evidence from The Finnish Unemployment Insurance Reform” , *Labour Economics* **17**, **4**, 643-654.
- Virjo, Ilkka(2007) : “Does Unemployment Insurance Make People More Passive?” , the 5th Researc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 Wang, Cheng and Stephen D. Williamson(1996) : “Unemployment insurance with moral hazard in a dynamic economy” ,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44**, 1-41.
- Yaniv, G.(1982) :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the Supply of Labor of an Employed Worker”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7**, 71-87.

# Abstract

##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Insurance for the Female Workers

- Focused on the Gender Analysis

So Hee, Le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is the role of both passiv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for the unemployed workers provides education, training and (re)employment services along with Unemployment Benefit allowances. And 20 years since being launched in July 1995, it has been developing rapidly as a social safety net for workers.

However, despite the Employment Insurance is developing steadily, it is consistently rated as insufficient protection for female workers and criticized discriminatory effects for males and females. Female

workers, especially in the labor market lie in the relatively disadvantageous employment status and at the same time they experience entry barriers in the labor market. Thus in this context, it is highly significant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female workers and seek for the development plan for these policies.

In this study,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and various labor market indicators were use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impact of 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Benefit on the reemployment of female and male workers.

With the method of Gender Analysis, this study was analyzed in two-dimensions, the external and internal effectiveness, for evalu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To analyze the external effectiveness, the application and receipt of the Employment Insurance on gender status and differences were looked into. To analyze the internal effectiveness, 15 years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from the 1<sup>st</sup> wave to the 15<sup>th</sup> wave) and experienced data resume(the history of jobs of recipients) were used to draw a conclusion. And Kaplan-Meier method,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ere performed on 855 samples that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The conclusion of the external effectiveness analysis, the Employment Insurance was developed very much to cover female workers. However, still in labor market, female workers were still on disadvantageous position and gender division of the labor was still reflected as it is. So, Unemployment Benefit's number of recipients, number of receipts and the amount of benefits paid were high on males which shows the gender unfairness is existed.

The next, internal effectiveness analyzing conclusion that were

used with Kaplan–Meier method, females spend more time in between jobs period and overall, the possibility of females’ reemployment was lower compare to males.

For the last, by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unemployment state to reemployment movement that were effected were looked in through the internal effectiveness analysis. Analysis result, the causes that effect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were shown different by genders. Also, Cox Proportional Hazard analysis was performed,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were the target, and the result has shown gender has a meaningful effect on reemployment. Moreover, the result has shown the possibility of females’ reemployment was lower compare to males.

In this analysis, the study concluded that effectiveness of Employment Insurance doesn’t apply identically on females and males. So as to improve the discriminative effectiveness about female, enhancing the female’ s Employment Insurance joining and the rate is needed. And it is presented that policy proposals for scrupulous consideration on the cause of female unemployment, wage on giving birth, nurture and supporting policy for the female workers’ reemployment.

**Keywords : 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 Gender Analysis, Reemployment,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aplan–Meier, Cox Proportional Hazard**

***Student Number : 2012–21944***